cpb.d.5

어머니회의 상징인 [흰 두건]은
아직도 아르헨티나의
진실과 정의로 향하는 투쟁의 상징입니다.

**• 초청인 · 후원인이 되어주십시오.**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초청행사에 필요한 약간의 후원금을 납부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국민은행 042-24-0423-302 이윤경

농 협 055-01-308641 이윤경

**추진 주관단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 전국 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5월 성역화를 위한시민연대모임

**후원단체**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 광주민중항쟁 14주년행사위원회,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아르헨티나

#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

•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를
온 국민이 함께 맞이합시다.

•

**아르헨티나 5월광장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박형규, 김승훈, 월주, 홍성우 외 200인)**
전화 (02)796-8364 팩스 (02)796-8366

한국-아르헨티나

#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

오월광장 어머니회 초청 자료집

## 차례


**인사말**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 취지문**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연대와 희망 / 초청추진위원회 … 1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 환영문**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강민조 … 3

어머니, 그 평화의 파수꾼들 / 윤정모 … 5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연혁** … 7

**5월광장 어머니회 소개**

아르헨티나 민주화의 불씨가 되어 / 김은영 … 8

**'과거청산'의 법적 제문제**

-인권침해사건의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박원순 … 18

**편지글**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닙니다 / 허두측 … 45

**방문일정과 행사내용** … 48


인사말

# 정의, 평화를 위해 싸워온 역사가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합니다.


서경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기정아… 기정아아… 엄마가 왔다아… 살았는지 죽었는지 대답해다오." 1986년 겨울 칠흑 같이 어둔 밤 미류나무 꼭대기에서 나무가지를 부여잡고 미친듯이 먹방에 갇힌 아들의 이름을 부르던 어머니. 몇날몇일 밤샘농성을 해도 자식얼굴 한번 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교도소 정문 앞에 서있던 아름드리 나무 위에 올라가 밤새도록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교도소관들에게 이끌려 내려왔고 다음날 미류나무는 베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감옥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던 1986년, 성고문 사건 권인숙양 선고재판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눈치를 보던 재판장은 권양을 향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순간 그 어머니는 바로 앞줄 줄줄이 앉아있던 교도관들의 모자를 빼앗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자 하나는 검사를 향해, 또 하나는 판사를 향해…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고 어머니의 손목에는 권양에게 채워졌던 그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자식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남편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끌려간 안기부 지하밀실에서 고문으로 심신이 갈기갈기 찢기우던 양심수의 어머니 그리고 양심수의 아내. 갇힌 자식의 손발을 풀기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리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들에게 돌아온 건 자식이 살던 감옥에 가는 것, 자식이 헤메던 그 거리에서 수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권력이라는 거대한 바위덩이를, 벼랑끝에 서서, 맨몸으로 맞서 이를 물리치지 못하면 이 땅이, 정의가, 평화가 내리깔릴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버텨온 지 10년.

그런데 지구 반대편 우리같은 어머니들이 또 있다구요? 우리처럼 거리에서 싸우는 어머니들이, 우리처럼 목요일이면 머리수건을 쓰고 광장으로 나간다지요. 우리처럼 이름은 문민정부인 그 나라에서도 독재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지요.

거창양민학살에서 광주민중항쟁의 영령들 채 감지 못한 눈들… 이철규, 이내창 젊은 의문의 죽음들… 인혁당 사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정치범 영령들… 전향테러, 혹독한 고문에 의해 0.75평 감옥에서 죽어간 양심수들… 그리고 지금도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수십년간 감옥에 갇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장기수들…

마침내 30여년간 군사독재를 끝내고 이른바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문민대통령은 국가권력에 의한 그 엄청난 범죄들을 "역사에 맡기자"는 말 한마디로 은폐해 버렸습니다. 역사는 차가운 땅속에 매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피흘리지 않고는 땀흘리지 않고는 눈물흘리지 않고서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쟁취할 수 없음을 깨달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온 것이 '역사'가 되어왔습니다.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그 어머니들이 우리나라에 오신다구요? 아득한 세월 멀리 전설처럼 들어만 왔던 그분들과 1994년 6월 이 빛나는 계절에 만납니다. 힘없는 나라를 침략한 제국주의자들이 허수아비 정권을 내세워 민중을 짓밟아왔기에, 제3세계 공통의 적인 제국주의자들을 물리쳐온 역사가 물리쳐야 할 과제가 우리를 오늘 만나게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그냥 피해자로 남아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픔을 뛰어넘을 때만이 그 아픔을 승화시킬 용기를 낼때 만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과거 독재권력에 의한 인권범죄들 그 미해결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평화와 인권실현을 위해 미약한 힘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 취지문**

#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연대와 희망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

5월이 다시 돌아옵니다.

대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난만히 피어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아름다운 5월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죽은 자식의 영전 앞에서 남몰래 눈물을 짓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오늘도 군부독재시절 고문으로 폐인이 된 자식의 얼굴 쓰다듬으며 한숨 쉽니다. 검은 스카프를 머리에 쓰고 집회장소로 향합니다.

'유신', '5공', '6공'은 모두 과거로 흘러갔지만 군부통치가 할퀴고 간 상처는 분명 지금도 남아있으며 이것을 슬기롭게 청산하는 문제는 밝은 미래에의 희망을 간직한 우리에게 지금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광기 어린 냉전의 시대, 군부독재의 시대는 끝나고 세계의 여러 곳에서 속속 민간정부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진정한 인권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이들 여러나라의 민간정부하에서도 '과거'는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칠레의, 아르헨티나의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나라의 경험은 권력범죄자들에 대한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심각한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물로 남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싸움은 우리 국민만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청산의 문제, 특히 처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의 문제 (불처벌=Impunity의 문제)는 바야흐로 전세계의 고난 받는 민중들이 함께 손잡고 풀어나가야 할 국제적 규모의 거대한 인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민시대'가 되어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인 과거청산작업…. 이것을 늘 안타까와 해온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봄에 드디어 아르헨티나의 '5월광장 어머니회'를 한국으로 초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5월광장 어머니회'는 암울했던 아르헨티나 군부독재시절, 군부에 의해 납치되어 실종된 자식들을 찾기 위하여 5월광장에서 머리수건을 쓰고 말 없이 원을 그리며 돌던 몇몇 어머니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제는 UN인권위원회의 안건을 바꿀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국제적 피해자 인권단체입니다. '과거'와 '자식'에만 집착함이 없이 항상 자식들이 바라던 밝은

미래를 시야에 넣고 분투함으로써 전세계의 숱한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법학자들과 인권학자들에게 번뜩이는 영감과 새로운 문제의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이 '5월광장 어머니회'와 한국의 고난 받는 어머니들의 만남이 우리의 답답한 과거청산운동에 획기적인 기원을 마련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 6월에는 고난 받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이 벅찬 감동 속에서 만나 사랑하는 자식들의 이야기, 눈물없이는 살 수 없었던 암울한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밝은 내일의 희망을 함께 이야기 하면서 서로 손잡고 나아갈 것을 약속할 것입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5월광장 어머니회'의 방한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바라는 모든 국민이 함께 치러내는 범국민적 행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난 받는 어머니'들의 이 뜻깊은 만남에 따뜻한 시선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 환영문

#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민조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회장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하는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은 아르헨티나의 오월광장 어머니들을 만난다는 설레임에 모두가 기쁨과 기대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혈연이나 지연, 문화가 다르다해도 고난의 시대를 살아온 어머니들로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며 겪은 아픔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순응하며 행복을 일구어 오기위해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가족을 잃게 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사람이 침묵하던 시기에 조국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딛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애쓰던 자식들이 가족결을 떠나갔을 때 우리의 가슴에 돌아온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자식을 그리는 마음으로 눈물로 한숨짓던 우리들은 자식의 죽음이 가족의 한으로만 삭이기에는 너무도 분하고 원통하여 집에서 거리로 나와 진실을 알리며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던 우리들은 여러사람의 힘으로 유가족협의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안 의식도 깨어가면서 조국의 현실이 어려우면 그 속에 있는 가정도 개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서서 움직이던 회원들은 참을 수 없는 울분과 증오를 토해내며 거리거리를 누비다가 좌절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심한 몸싸움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자리에 누워있기도 하지만 투신하며 온 몸에 기름을 붓고 산화해간 자식과 고문과 폭력으로 도로에서 호수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산속 동굴에서 발견된 수십명의 의문의 죽음을 당한 처참한 주검들을 떠올리며 자식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오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하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니 유가족협의회로서는 절로 힘이 나는 일입니다. 어려운 조건임에도 우리들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모두의 성의를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노상에서 장사를 하며 근근이 생활해 나가는 회원에서부터 자식이 주는 용돈을 가지고 활동하는 회원에 이르기까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무엇인가 오월광장 어머니회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독재권력에 의해서 실종된 가족들을 찾고자 모임을 만들었던 오월광장 어머니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주인정신이 강한 단체로 국제인권 단체 가운데에서도 가장 인정을 받는 조직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체를 움직이는 힘이 어머니들로부터 나오고 여기에서 생기는 저력이 다른 단체와의 연대 속에

떠 받쳐질 때 그 힘이 크다는 점을 가르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실종되어 생사를 모르지만, 다시는 이러한 고통을 받는 가족들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는 자세 또한 큰 가르침입니다. 과거청산문제에 있어서도 물질적 보상 이전에 실종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뚜렷한 인적, 제도적 요구는 바로 우리의 요구가 아니던가요? 이렇듯이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할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이 한국인권단체 더 나아가 아직도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오욕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하나의 사건으로 남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울러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참다운 인권사회를 위해서 우리들은 자식들이 걸어간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어머니, 그 평화의 파수꾼들

윤정모 소설가

길을 가다가도 웃는 아이를 보면 괜히 함께 웃어주고 우는 아이를 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엄한 것이 모성애며 지구가 이만큼이나마 보존되어온 것도 모성애가 살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함이 세상 곳곳에서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도 아르헨티나 5월광장의 어머니들일 것입니다. 자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잡혀갔는지도 모르다가 결국은 전부 살해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때로 파헤쳐진 뼈조각을 가슴에 받아 안아야 했던 어머님들, 바로 그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어머니들, 이 귀하신 손님들의 고통과 그 역사의 질곡은 우리 유가협, 민가협 어머니들보다 더욱 지독합니다. 우리들이 유신이란 칼날아래 민청학련으로 대탄압을 받고 있던 바로 그 시기인 70년대에 아르헨티나엔 군사독재가 수립되었고 30,000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비밀 집단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다가 살해되어 불태워지거나 암매장되었다고 합니다. 그 실종자들의 어머니들은 자식의 생사라도 알기 위해 경찰서, 내무부, 성당 그리고 정치가들을 찾아다니며 호소했지만 어디에서도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절망속에서 거리를 헤매 다녔습니다. 실종되던 날 아침 아들이 잊고나간 성모상 목걸이나 수첩을 가슴에 품고 혹시 어느 골목에서 내 자식이 바람에 떨고 있지 않나, 어디로 실려갔다면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리 저거리를 기웃거려 보았으나 만난 사람은 자식이 아닌 똑같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아픔도 뭉치면 힘이 된다고 이렇게 만난 어머니들은 자연스럽게 광장으로 나가 서로 실종당한 경위를 털어놓으며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재정권은 이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도 불법집회라고 강제해산을 시켰고 혼자일 땐 연금, 미행까지 하면서 서로의 만남을 방해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일 광장 벤치로 모여들었고 경찰 역시 끈질기게 곤봉을 휘두르자 어머니들은 한사람씩 떨어져 광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도 불법이라면 침묵을 지키겠다, 대신 광장을 돌면서 기도를 하리라… 어머니들은 묵묵히 광장을 돌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자식이 살아는 있는가요?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요? 오, 하나님, 당신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제발 좀 이 에미를 그곳으로 인도해주소서…

그러자 이번엔 무장군인이 왔습니다. 오직 광장을 돌면서 기도만 할 뿐인데도 무장군인들은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들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광장을 빼앗기면 모두 잃는 것이다. 우리는 이곳을 사수해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서로 한곳으로 모여들면서 큰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쏠테면 쏴라! 여기서 다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광장을 떠날 수 없다! "

어머니들의 이 용기에 질렸는지 그들은 차마 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이 그 광장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있고 질긴 싸움 덕분에 오월광장의 어머니들은 독재에 대한 항거의 상징이 되었습니

다. 또한 군사정권이 무너진 후로는 그 학살의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잘못에 대해서도 멈추지 않고 알려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긴 싸움동안 아르헨티나 언론엔 한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는 언론, 광주항쟁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단 한줄의 설명도 없었고 죽은 사람들을 트럭에 실어 어디다 묻었는지에 대해서도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마디 해명없이 실종자로만 처리된 우리나라, 그리고 민가협 어머니들 —.

처음엔 이웃이 알까봐 드러내놓고 울지도 못했던 우리 어머니들,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자식의 빈 자리에 목을 매이던 어머니들이 언제부터인가 서로 힘을 합쳐 조그만 사무실을 얻었고, 아들이나 딸들이 재판을 받으면 함께 법정으로 몰려갔고 날조된 재판을 항의하기 위해 법정앞에서 담요를 쓴 채 밤샘 농성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강제로 닭장차에 실려 시외에 버려지면 그 먼길을 허위허위 걸어와 다시 모이곤 하시던 어머니들, 일일 노동이나 파출부를 하면서 민가협에 나올 차비를 벌고, 아들 속옷이나마 넣어주기 위해 지방 교도소를 내집처럼 드나들던 분들, 면회가 되지 않으면 며칠이고 교도소 밖에서 버티고 서있던 어머니들, 아는 것은 자식밖에 없던 우리 어머니들이 어느새 투사가 되어 어머니부대로 뭉쳐가더니 마침내는 언론도 덮으려던 박종철 열사의 고문사를 만천하에 알려냈고 검은 수건에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하시며 6월항쟁에 불을 당기기도 했습니다.

85년도던가, 민가협이 꾸려졌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어머니들은 처음으로 지구 저쪽 끝 아르헨티나에도 당신같은 어머니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마다 눈시울을 붉혔지요, 세상에 실종자만도 3만명이나 되고 그들이 모두 죽었단 말인가, 자식을 감옥에 둔 우리도 가슴이 비어 밤마다 폭풍이 몰아치는데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 어미들의 통곡을 어쩔거나 — 이렇듯 인종은 달라도 가슴에 찍힌 푸른 멍들은 너무나 흡사한 어머니들, 똑같이 독재정권을 겪어내고 고문, 투옥, 실종을 당했으며 역사 앞에 그 사실을 밝히려고 똑같이 온몸을 던져 온 이분들이 이제 만나서 마침내 서로 얼싸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계를 향해 조용히 외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모두 내 자식이며 우리 공동의 아들, 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포옹은 이제부터 너와 나, 우리들의 아이들을 함께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며 아울러 과거 독재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실종책임자들은 처벌되지 않았고 우리 역시 과거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도 그대로 살아 감옥에는 여전히 44년이란 세계최장기 구금기록을 갱신하고 고문조작된 장기수마저 풀려나지 않았으며 오늘도 감옥으로 가는 양심수 행렬은 계속 되고 있기에 수천만, 수백만 한맺힌 의문의 죽음,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에 이 선언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할 것입니다. 이 어머니들의 만남의 의미와 평화의역사를 —

그날을 기다리며.



##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연혁

**1977. 4.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시작** : 군부독재아래 의문의 실종으로 자식들을 잃어버린 14명의 어머니들이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 대통령궁이 마주보이는 오월광장(La Plaza de Mayo)에 처음 모임. 머리에 흰 두건을 두른 어머니들은 "정의와 진실"을 위해 침묵의 원을 돌며 아르헨티나 양심에 경종을 울림. 원을 도는 어머니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 "오월광장의 어머니들"이라고 불리워지게 됨. 어머니들은 이 모임을 통해서 참담한 슬픔을 정의와 자유를 향한 공동의 의지로 발전시킴.

**1983 민선정부, 그 이후** : 3만여명의 실종자를 미궁에 남겨둔채, 마침내 민선정부(알퐁신 대통령)가 들어섰지만, 부패와 억압기구는 그대로 남고 인권침해가 계속될 뿐더러 과거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과 관용이 베풀어지자 오월광장의 어머니회는 과거의 권력범죄를 폭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압력을 넣는데 집중. 그후 어머니회는 "당신은 과거 우리의 자식들을 죽인 고문자들과 살인자들이 어디서 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989) 라는 긴 제목의 캠페인을 시작,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거를 덮어두려는 새 민간정부의 정책을 질타.

**현재** : 19개지부 약 2천명 이상의 회원

매주 목요일 오월광장에서 행진모임, 영어 불어 이태리어 월간 기관지 발간, 아르헨티나의 인권현실 강좌 개최, 노동자 · 농민 등 기층단체들과의 연대활동 국제적 관심

**국제적 관심**

1990 : 사회정의에 깊이 관여한 업적으로 암스테르담에 오월광장 어머니의 동상이 제막. 〔레온 필립 국제 용기있는 시민상〕을 수상.

1991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어머니회를 지원하는 국제페스티발〕 개최.

1992 : 유럽의회가 주는 사하로프 양심의 자유상을 수상.

•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계속 불처벌문제를 인권침해의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해와 주요 안건으로 상정할 만큼 커다란 상징력과 영향력을 가짐.

• 주소 : ASOCIACION MADRES DE PLAZA DE MAYO

Hipolito Yrigoyen 1442, 1089 Buenos Aires, AREGENTINA

Tel.(54-1) 383- 6430/0377 Fax.(54-1) 954-0381

# 아르헨티나 민주화의 불씨가 되어

김은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다음은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장이 1988년 외국의 한 회의에서 발표한 연설내용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3호(발간예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번역과정에서 아르헨티나의 현대사를 잘 모르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은 가능한한 그대로 원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민간인들의 실종은 74년부터 75년 AAA (아르헨티나반공연맹 Argentine Anticommunistic Alliance)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실종은 600여건에 달했지요. 76년 독재정권이 수립되자 실종은 더욱 증가됩니다. 그리고 실종자들의 어머니들은 내무부, 경찰, 교회, 정당,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정치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어머니들끼리 서로 얼굴을 부딪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내무부에서, 경찰에서, 거리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자식들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절망감을 안고 찾아가던 감옥에서 —.

어느날, 관청들을 헤매다니던 어머니 중 한분이 이렇게 말했지요. "이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광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호소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월광장에 나가게 된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단체들이 있는데 왜 굳이 어머니회는 광장에 나가는가, 왜 우리가 광장에서 그렇게 편한 느낌을 갖는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당신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나요?" 아들 딸들을 어딘가에 빼앗긴 어머니들로서 우리는 모두 같은 고통을 당했고 바로 이것이 오월광장 어머니회가 생긴 이유이고, 오월광장 어머니회가 굳건해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가 알게된 것은 이 공감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한편, 우리의 첫번째 모임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자연스러운 행동을 낳았습니다. 첫번째 행동은 경찰이 약 60-70명의 어머니들이 공원의 의자 반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쫓아내려 했지요. "여기에 있으면 체포하겠다. 이렇게 모여 앉아있는 것은 불법시위다. 일어나 돌아가라." 그리고서 그들은 곤봉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일어서서 걸어야 했습니다. 바로 경찰이 우리를 행진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원을 돌고 있다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다'는 말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이며 '행진한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며 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행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의 팔을 꼭 낀채 걸으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자라서 강해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경찰은 어머니 한분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지요. 그때 그 어머니는 겁에 질렸는데 왜냐하면 순진하게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 이름을 모를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게지요. 다음날 그리고 세번째 목요일에도 다시 증명서를 요구하자 우리는 우리 모두의 신분증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300여개의 신분증을 넘겨 받은 그 경찰은 물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경찰이 그 모든 서류를 한 사람씩 확인하면서 돌려주는 오랜 시간동안 광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의 연대, 통일, 보다 많은 결합에서 나온 진정한 행동이었고 그것이 결국 경찰의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어머니들이 신분증을 내준다는 것은 뭔가 암시적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북미의 인권인사인 테렌스 토드만, 사이러스 뱅스가 정부를 방문하러 왔을 때입니다. 토드만이 왔을 때 우리는 광장에 나갔고 이 때문에 독재정권은 특사를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떠난다면, 우리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독재자 비델라 의견대로 따르자고도 했으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마찬가지일꺼라고, 그는 우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몸뚱아리를 심지어 기둥까지 붙잡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장한 군대가 왔어요. 군대가 "행동개시"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는 모두 "쏴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이 토드만을 취재하러 왔던 외국기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요.

기자들은 30명도 안되는 이 여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보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여러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는 보도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해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지요.

한번은 큰 다른 단체들과의 행진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여러지역에서 합류하는 문제때문에 어떻게 서로를 알아볼까 고민하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기로 했지요. 그리고 자식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그애들이 애기적에 입던 흰옷으로 수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후, 사람들이 실종자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외치는 흰 머리수건을 두른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흰 머리수건은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상징물이 되었지요.

그 당시 우리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실종자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추적하며 하나하나 모아 열심히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 명단을 인쇄하기 위한 모금을 하던 중, 누군가 친척과 수녀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두사람의 납치를 알려왔습니다. 우리는 당황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너무도 무서운 현실, 우리 자신들이 납치되다니 —. 나는 이 명단의 인쇄를 중단하고 실종된 이들을 찾자고 말했지만, 아주세나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에 납치된 사람들은 바로 이 명단을 위해 실종되었어요.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렇게해서 우리는 이 명단을 간행했습니다. 그후 아주세나마저 그 명단이 실린 신문을 사러나갔다가 집모퉁이에서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야할지 난감했습니다.

우리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지요. 그 분노의 시절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우리 아들, 딸들이 사라져갔고 이제는 두 명, 심지어 세 명의 가족까지 잃은 어머니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세나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고통을 당했기에 그리고 적들의 모진 탄압을 당했기에 서로 공감했던 곳, 평등하게 느꼈던 곳, 광장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

**광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체포되곤 했어요.**
**폭력은 다반사였고 심지어 개를 풀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 개들과 맞서기 위해 우리는 돌돌 말은 신문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서 우리는 광장에서 모임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목요일, 광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어머니들을 다시 불러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광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안된다고, 미쳤느냐고, 위험하다고, 도대체 무엇때문에 광장에 가느냐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광장만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장소였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죽은 자식들을 그곳에서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78년 아르헨티나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재미있었겠지만, 그것은 더 많은 납치를 보장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압력이 가중되었지요. 광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체포되곤 했어요. 폭력은 다반사였고 심지어 개를 풀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 개들과 맞서기 위해 우리는 돌돌 말은 신문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최루탄에는 중크론산염과 작은 물병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광장에서 배웠습니다. 한번도 부엌을 떠나본 적이 없던 다 큰 아줌마들이 전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던 것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실제로 차지하고 있던 것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천국이라는 그 작은 공간, 우리의 광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월드컵이 있던 동안, 이 모든 일은 은폐되었습니다.

월드컵동안 광장에서는 탄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모였고, 가능하면 같은 교회를 이용하지 않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보면 이미 경찰들이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전기를 끊고 우리를 쫓아내곤 했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우리를 달가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과 거룩한 마리아 사이에서 우리들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아무날에 우리가 아무아무곳에 갈 것이요. 아베 마리아—" 이런 기도가 종이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다음 활동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좀전에도 얘기했듯 우리는 월드컵동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월드컵에 반대하는 우리들을 반민족주의자라고 공격했지요. 그러나 월드컵이 시작되었을 때,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장 옆 광장에는 많은 외국기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것이 때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기자는 월드컵의 개막식 대신에 광장을 행진하는 어머니들을 방송했거든요. 같은 해, SOLMA같은 후원 단체들은 지지의 표시로 프랑스의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동조해준 SOLMA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의 보낸 목요일마다 여러분들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어머니들과의 연대를 위한 목요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해 말, 월드컵이 끝나고 우리는 미국과 로마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짐작해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훨씬 많은 노력과 두려움이 있었지요. 우리는 단지 떠난다는 것만 확실했지, 사실 돌아오게 될런지조차 불확실한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별 생각없이 신문들 대신에 우리를 도울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외무위원들, 국회의원들, 귀족같은 고위급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정치에 관한 지식의 부족도 원인 중 하나였지만 어쨌든, 그 결과 우리는 면담에 성공했고, 외국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촛점이 되었고 수많은 민중 단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나 그 때부터 어머니회에 대한 탄압은 극악무도해졌지요. 목요일마다 우리는 억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체포된다면 모두가 그와 함께 하리라 결심해 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40-60명씩 억류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류되어 있다고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한 어머니가 감금되었을 때, 우리는 만약 한사람이라도 잡아간다면 우리 모두 함께 잡혀가겠다고 경찰차에 올라탔지요. 한대나 두대에 다 차지 않을 때는, 세번째 차에 올라탔어요.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면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우리는 다른 어머니들과 감옥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장은 우리가 왜 감옥에 들어가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 이유는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새벽에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었고 강한 심성을 지닌 몇몇 어머니들은 모든 어머니들이 풀려 나올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도, 정치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들의 영혼밖에 없었지요.

79년, 미국정부기구인 OEA가 왔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OEA는 어머니들을 위해 행사와 운동을 조직했고, 우리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단체가 우리 어머니 모두의 인터뷰를 수락해서 150명의 어머니들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OEA의 방문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실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방문은 목격자를 가려내 죽이는데, 더 많은 테러를 유발하는데 쓰였을 뿐입니다.

아뭏든 많은 이들이 노래하고 외치는 동안 우리는 광장에서 줄을 서 기다리는 모욕을 겪었습니다. 많은 단체들 앞에서 줄을 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진 일이었지만, 단지 한번 더 말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무부장관에게 다음은 경찰,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우리얘기를 되풀이해왔습니다. OEA가 왔을 때도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야 했구요. 이점이 바로 우리가 CONADEP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해결책은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 여러번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해왔기 때문입니다.

80년에 우리는 다시한번 광장을 점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만 한다는 각오로 광장을 얻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방심하고 있었고, 우리가 예전처럼 목요일 오후 세시 반에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목요일, 경찰은 전쟁준비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나무위까지 점령하고 자동소총으로 우리를 겨누고 있었지요. 그들은 때리고 개를 풀었으나 우리는 그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과거의 투쟁을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광장은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광장을 회복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권과 헌법상의 권리를 획득하는 올바른 길이라는 —.

**독재란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다시 한번 많은 자식들을 잃으면서 깨달았지요**

70년대부터 소식지를 내기 시작했었고, 유럽 전역에 어머니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80년에 "살아서 나타나라(돌아오라)" (Aparicion con vida)라는 우리의 구호도 만들어졌습니다.

1981년에는 우리의 첫번째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어머니들에 의해 쓰여진 저항의 시들을 발간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는 저항행진을 조직했습니다. 행진을 원하지 않은 단체들은 저항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어머니들은 저항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24시간내내 광장을 행진하기로 했고, 돌다가 지치면 교대로 벤치에 앉아 쉬다 다시 걷고 하면서 독재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세명의 독재자가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첫 단식을 단행했습니다. 저항행진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낄메성당에서 10일간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들은 서로를 지탱시켜 주었고, 지하 행진과 단식의 의미를 알렸습니다. 자유와 헌법에 기반한 정부를 얻으려는 바램 하나로 우리는 그 공포의 밤을 희망을 가지고 벗어날 수 있었던거지요. 여전히 실종자들 중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무엇보다도 학살 책임자들을 처벌시키겠다는 열망이 우리를 버티게 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순진하게도 책임자들의 신원이 확인돼 있으므로 그들을 벌줄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지요.

1982년의 포클랜드전쟁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잊어간다 해도요.

당시 가치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전쟁을 주장했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들은 굳건하게 포클랜드에 있었던 군인들의 어머니들과의 연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은 거짓이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또 하나의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국가단체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광장에 나갈 생각을 하느냐고 묻는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적힌 포스터로 대답했어요. "포클랜드사람들도 아르헨티나인들이다. 실종자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아르헨티나는 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독재란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다시 한번 많은 자식들을 잃으면서 깨달았지요. 군대의 실체를 알지 못 했던, 아르헨티나가 전쟁에 지리라고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 자식, 형제, 동지들과는 또 얼마나 갈등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1982년, 다수의 정당들이 생겨났고 어머니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각 당원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초대를 받았든지 안받았든지간에 앞뒷문으로 싸워가며 들어갔습니다. 5년동안 냉동실안에 있어온 정치가들에게 우리 얘기가 실린 자료들을 전해주었지요. 이렇게 모든 정치가들에게 똑같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삼만명의 실종자 문제를 후세에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뒤덮어 버릴 이 공포를 물려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들으려고도 하지않는 정치가들을 상대로 쉴새없이 그 일을 해야했습니다. 독재정권 앞에서 침묵했던 그들 역시 우리 자식들의 실종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았던 게지요. 그리고 그것이 정치가들이 우리를 후원하려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전의 행적의 결과인 실종자문제를 길게 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30,000명의 실종자를 낸 그 끔찍한 Martinez de Hoz의 경제 계획에 반대한 우리 자식들에게 결코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1983년, 정당들의 호의로 어머니들은 인터뷰, 호소문,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일하게 되었고 마침 그때 선거에서 알폰신이 당선되었습니다. 알폰신은 찾아간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그때는 단지 그가 친절하다는 생각만 했지요.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접대했던 것인데요. 알폰신은 실종자들이 살아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우리 역시 실종자들이 살아있음을 믿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지요. 하지만 대통령이 실종자들을 찾기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군대에 전보를 보내어 실종자들에 대한 소식이 있는지를 물었을 뿐입니다. 군에서는 늘 그랬듯이 상투적으로 모른다는 답신을 보냈음은 물론이지요. 그것이 그가 우리 자식들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그해 어머니들은 사진캠페인을 벌였고 또한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투쟁을 그린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터에서 우리 자식들이 보통 사람들과 함께 정의, 자유, 숭고함을 위해 싸웠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실종된 것으로 덮어버리는 정치가들에게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결코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활동들이었습니다. 합법정부는 희망적이었고 첫 한달만에 CONADEP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CONADEP으로 결합했지만 우리는 CONADEP의 일원으로 취급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CONADEP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국민에 의해 뽑히지도 않았고, 단지 알폰신이 시간을 벌기위해 만든 위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그리고 삶을 위해 많은 시위들을 조직했습니다. 내 아이뿐 아니라 모든 자식들을 찾아야 된다고 각성한 후,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모두의 해결을 주장함으로써, 즉 전혀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성장해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만 걱정하는 급진당원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는 다함께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CONADEP에 실종자 명단을 내주지 않았고 알폰신의 백지 수표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5만쪽의 명단으로 무엇을 할지, 그리고 법정에 있었던 지난 시절의 모든 자료들로 무엇을 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이전의 독재시절과 연루되어있는 재판관들을 계속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군을 증강시키고 군의 음모에 공모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우리는 CONADEP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해에 우리를 지지하는 일단의 언론가들과 심리학적 원조 단체들의 연합(Support Front)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매우 희망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거리에 알려 나갔고 첫 신문을 냈지요. 다음에는 변호사들을 조직했습니다. 실은 사법부를 믿을 수도 없었고 민중들에게 사법적인 해결책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민중들과 함께 싸우고, 조직하고,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료들은 항상 이 모든 문제들이 법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하곤 합니다만, 오히려 법은 그들의 공격수단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우리 국민들 눈앞에서, 그리고 전세계 사람들 앞에서 살인자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치욕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정치적인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던 85년의 재판은 시민법정에서 군법조항아래 이뤄졌습니다. 피고석에는 살인자도 없이 몇몇의 증거들만이 골라진채 즉, 다국적 기업은 결코 손도 대지 않은채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참석한 공개재판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판결 예정일은 85년 11월, 바로 부통령 선거가 있기 전이었는데 정권은 형량이 클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선거일로부터 15일후로 판결을 연기시켰지요. 첫 판결이 내려진 날, 그곳에 있었던 나는 흰 머리수건을 벗도록 강요받았답니다.

나는 수건을 좀 뒤로 넘겼으나 스트라세라가 좀더 낮추라고 얘기했고 나는 다시 수건을 썼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수건을 뺏아갔으나 나는 여러장의 수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뺏아가면 다시 쓰고 다시 쓰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싸움이었지요. 여기 모인 사람들도 다 모자를 썼는데 왜 그들은 내버려두는가, 경찰들도 모자를 썼지 않는가는 내 질문에 대한 경찰의 대답은 흰 수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꾸했지요.

"이 법정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유일한 일은 흰 머리수건을 처벌하는 것뿐이군요." 그리고 드디어 판결문이 낭독되었을 때 나는 일어서 나왔습니다. 불행하게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나외에 다른 기구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나는 말했지요. "그들은 우리 국민들 눈앞에서 그리고 전세계 사람들 앞에서 살인자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치욕입니다."

1985년, 우리 어머니들은 알퐁신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6월 24일로 약속을 잡았는데 그날은 Gardel의 날이었지요. 그러나 오후 6시, 다른 지방에서 특별히 올라온 어머니들과 함께 찾아갔을 때 알퐁신은 Gardel을 듣기 위해 콜론 극장에 가봐야 한다며 접견을 거부했습니다.

Gardel은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우리들은 미리 요청했던 것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를 기다리기로 했고 그래서 결국 20시간동안 관사를 점거하게 되었습니다. 담요, 커피등을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서 밤을 보낼 수 있었고 기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입장을 받아주고 앞으로 어떻게 돼갈 것인가, 어머니들과 언제 만나줄 것인가를 정해줄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우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의 점거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어디를, 왜 가야하는지만 분명히 안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행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985년 우리는 손을 맞잡는 대규모의 행진을 조직했습니다. "실종자들에게 당신의 손을 건네 주지 않으시렵니까?"라는 요청에 세계 곳곳에서 수천의 손들이 종이에 그려져서 보내져왔고 오월 거리와 광장에 전시되어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 커다란 연대와 이해를 보여주었지요.

그것은 이 투쟁을 시작한 사람들, 우리에게 힘과 많은 의미를 준, 바로 우리 자식들에 대한 지지를 의미했습니다.

1986년에는 '과거최종청산법' (Punto Final) 때문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과거최종청산법'은 법의 청산에서가 아니라 알퐁신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자식들이 묘지에 매장되어 있을 거란 전보를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 몇몇에게는 시체의 일부가 상자속에 담겨 자식의 시체라고 전해지기도 했지요. 우리는 절망 속에 울다가 그 발굴된 시체들를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치상황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말하는 그 발굴된 시체를 받아들인다면, 즉 학살자가 밝혀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시체를 받아들이고 만다면 그들을 다시한번 죽이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회는 어떤 상황에서 죽었는지 혹은 살해되었는지도 모르는 시체를 받아들임으로써 군을 면책시켜주는 수치를 거부한 유일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우리는 왜 발굴된 시체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지 며칠째 토론을 했습니다. 시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각 장소마다 "여기에서 그가 공부했다" "여기에서 그가 일했다"라고 적힌 작은 명판을 붙이는 일이 그들이 말하는 '과거최종청산법'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과거를 묻어버릴 수 있기에 우리는 거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들이 여기에서 자식들의 투쟁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가들이 실종자들을 추도하고 어머니들을 달래려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려 했고, 국민을 위해 싸웠던 실종자들을 따르려 하는지 어머니들과 함께 하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나서 우리는 또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치가들이 원하는 '과거최종청산', 즉 시체들의 발굴, 경제적 보상 그리고 사후 명예회복 이 세가지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엣날에 반역자였던 판사, 부패했던 판사들, 도저히 그 지위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지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최종청산법'과 '사면법'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법률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부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 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공포와 잔학한 행동의 책임자들에게 계속 죄를 물어 적어도 모든 책임자가 한번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단지 자식들이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당내 선거에서 자신의 지위만을 걱정하는 타락한 정치가들과 부패하고 굴종적인 재판관과 최고법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커다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 투쟁이 어머니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이 미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물론 진상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결코 쉬지 않으니까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라는 식의 말로 집단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이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렸고 당황했지만 그것

**살인자들이 풀려나고 집행이 취소당해도**
**우리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투쟁을,**
**생각을, 노선을 그리고 우리협회를 물려받으리라 믿습니다.**

은 진실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책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그 두려움을 심어줬기 때문이지요. '사면법'과 '과거최종청산법'을 저지른, 문책받아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책임자들은 스스로를 용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군사독재의 공모자였던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 점이 군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을 위해 법을 독단적으로 집행한 이유입니다. 알메리아의 메달리아, 마드리드 거리에는 오월광장어머니회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루앙의 거리에도 같은 이름이 붙여질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일입니다.

그렇게도 힘든 우리의 활동이 우리나라 바깥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알려진다니. 사람들이 오월광장 어머니회를 얘기할 때면 반드시 우리 자식들을 기억하겠지요. 우리자식들은 지금의 우리를 낳았고 가는 곳마다, 하는 활동마다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의 활동은 사슬같습니다. 각 어머니들은 하나의 고리와 같아서 약해질리도 없을 뿐더러 약해져서도 안되고 느슨해지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점입니다. 오월광장, 우리 나라의 독립과 자유가 짓밟힌 이곳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며 우리가 남아 자유를 키워갈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맡은 일이고 매일, 매순간마다 이 자유의 나무가 자라고 거대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살인자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살인자들이 풀려나고 집행이 취소당해도 우리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투쟁을, 생각을, 노선을 그리고 우리협회를 물려받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 투쟁의 열매를 보지 못할 것이겠지만요. 우리가 싸워온 것은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요, 정치적 야심이 있어서도 권력을 탐해서도 아닙니다. 아직도 감옥에 있는 우리의 동료 30,000명의 투쟁을 따르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그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문서 작성 등 모든 일은 동료들 간의 대화속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어머니들은 스스로 헤쳐 나왔던 방식으로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의 계획도 남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국민들과 튼튼한 민중조직들이 조직되고 연대하고 있어 다시 한번 70년대의 그 활기가 되살아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치고, 패배하고, 눌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라도 그들은 일어서서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속고 배신당했던 1987년 4월 시위때 이 사실은 증명된 바 있습니다. 교사들의 파업, 지식인 계층이 거리를 점령했던 그 때 이미 보여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끌어낼 수 있는 똑똑하고 정직한 지도자들이 있기만 하다면, 사람들은 일어서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여러분이 만들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조직해야 하고, 일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전사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무엇을 계획하는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식들이 이미 투쟁 속에서 자유와 사회적 정의의 길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것을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을 위해 우리자신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 아침마다, 깨어날 때마다, 어머니들은 일하러 나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어머니들을 세상에 내보내고, 이런 삶의 방식을 가르쳐준 우리 자식들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이 광장에 우리와 함께 있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 국민의, 우리 국민에 의한, 우리 국민을 위한 삶을 향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두가 원하는 것을 정말로 대변하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민중정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투표만 할 수 있을 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정의로운 민중정부가 공포의 세월을 살게한 학살자들을 처벌할 날이 올 것입니다.

### *살아서 돌아오라 !*
### *- 초청된 어머니들의 실종된 자식들*

### • Humberto Luis Fraccarolli Molina

**생년월일** : 1951년 6월 26일, 부에노스 아이레스州 사란디에서 출생 가계 : 막시모 프라까롤리와 아우로라 세실리아 돌리나 데 프라까롤리의 아들로 태어남.

**결혼유무** : 기혼, 부인-알리시아 그리셀다 까메라 데 프라까롤리, 아들-니꼴라스.

**직업** : 학생, 로사리오 국립대학 의과대학 3학년 수료. 이후 라 쁠라따 국립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 경제, 재무부에서 근무.

**납치일자 및 장소** : 1977년 2월 23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라 쁠라따 33거리참고사항 : 그와 함께 5명이 납치되었으며 그 중엔 임신 5개월의 여성도 포함됨.

**납치당시의 상황** : 이웃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약 저녁 9시경에 제복을 입고 무장을 한 사람들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경찰 소속 차량으로 이동하여, 한 불럭을 완전히 에워싸고 최루탄을 난사. 확성기를 통해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체포하거나 납치.

**그 외의 비공식 자료** : 1977년 3월 그라셀리 아르헨티나 해군사제가 그의 가족에게 그가 살아있으나 장소는 알지 못한다고 말함. 1977년 7월, 라쁠라따 경찰서 5가 지하실에 납치되었다가 후에 풀려난 한 사람이 움베르또, 그리고 함께 납치된 5명과 함께 어둡고 습한 지하실에서 계속 갇혀 있었고, 전기고문, 물고문, 분뇨고문을 당함. 하루에 한 번 욕조에 처박혀야 했고, 식사는 형편없는 것이었음. 담요도 매트리스도 없이 맨바닥에 내팽개쳐진채 잠을 잠. 1977년 9월, 역시 라 뽀라따 경찰서 5과에 있다가 풀려난 또 다른 사람이 움베르또가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힘.

### • Alberto Jose Pargament

31세, 의사 , 1976년 11월 10일 납치됨.

새벽 2시, 수위를 위협하여 아파트에 침입, 문을 부수고 들어와 아들 얼굴에 두건을 씌워 끌고가 버림. 임신 6개월이던 며느리는 데려가지 않아서 도망침. 얼마후에 다시 와서 집안의 귀중품을 모두 훔쳐 달아남.

# '과거청산'의 법적 제문제

## -- 인권침해사건의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변 호 사 박 원 순

## 1. 서 론

### (1)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

"문민정부가 들어서 모든 것이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는 오늘도 야수와 같은 군사정권의 발톱에 할퀸 상처받은 영혼을 부둥켜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 만 33세인 문국진씨는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네살박이 딸과 아내가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1986년부터 시작된 정신분열증으로 이번으로 벌써 여섯번째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문국진씨는 대학 2학년때인 1980년, 서슬퍼른 전두환정권하에서 반공법위반으로 구속되어, 프락치활동을 강요하는 치안본부 형사들의 무차별 구타와 물고문을 1개월동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1]

문민정부의 깃발아래 모든 인권문제가 해소되고 인권보장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환상을 일시에 깨우는 경구가 아닐 수 없다. 위와같이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마당에 인권문제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잔인한 위선이요, 배신이다. 우리 이웃들이 과거의 어두운 기억과 상처로 지금도 쓰라림을 당하고 있을 때 과거는 지나간 어제일 수 없다. 그것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현재이며 그 상처의 치유없는 미래는 우리의 편안과 행복의 보장일 수 없다. 더구나 문제는 '상처받은 영혼'과 육체를 부둥켜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이웃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에 있다.

1. 문국진 고문피해 대책위 준비위원회, 10여년의 청춘을 앗아간 고문의 상흔, 1993.8.7, p.2



### (2) 우리 현대사와 '과거청산'의 과제

새로운 정권에게 있어서 구정권은 언제나 어떠한 형태이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새로운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그 정당성의 입지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진 형태와 양상에 따라 구정권에 대한 정리의 내용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우리 현대사에서 이같은 구정권하의 범죄와 과오에 대한 청산의 노력이 권력의 교체기마다 제기되어 왔다. 해방직후에 일제하의 반민족행위자들의 처벌문제가, 4.19혁명 이후 자유당정권의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응징문제가, 5.16 이후 부정선거·정치깡패·용공활동의 재판이, 제6공화국과 현정부하에서 광주학살의 책임자처벌문제 등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곤 하였던 것이다. 특히 '해방이후 최초의 문민정부'라고 하는 현정부하에서 그동안 반민족적이고도 반민주적인 권위주의의 역대 정권하에서 저질러지거나 은폐되어왔던 수많은 권력남용사건, 인권유린사건, 정치적 범죄행위등이 일시에 터져나와 그 진실의 공개와 피해자 배상, 책임자처벌등의 요구가 홍수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요구들이 제대로 수용되고 처리된 사례를 우리 현대사에서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지금 이시간까지 여전히 그 허다한 사건들의 진실을 어둠속에서 견져내지 못하고 있으며 희생자들의 고통 역시 치유되지 못한 채 내팽개쳐져 왔다. 물론 어느 시대, 어느 사회도 그같은 완벽한 '과거의 청산'을 이룩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사회만큼 과거의 문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세대와 세대를 넘어 축적되고 해결이 지연된 사례는 보기 드물다. 너무도 오랜 세월 계속된 권력남용과 인권유린, 그 희생자들의 숨죽인 인고, 가해자들의 승승장구와 희희락락, 이것이 우리 현대사의 좌절의 자화상이다. 이제 미루어진 숙제, 지연된 정의의 심판을 더 이상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는 없다.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것이다.

### (3) '과거청산'의 개념과 범주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논의해 온 '과거의 청산'이란 구정권과 그 시대하에서 벌어진 권력남용으로 인한 비리와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일정한 형태의 정리라고 할 수 있다. 인권침해사건의 진정한 해결에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들추어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명목상의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법률적인 시정[2] 또는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진실의 공개가 우선된다. 완전한 진실의 공개없는 처벌은 '자의적 복수'가 되고 말며 정확한 진실의 파악 없는 관용은 특혜의 면책에 불과하게 된다.[3] 진실의 은폐는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다시금 짓밟는 것이다.[4] 제대로 밝혀진 진실의 바탕위에 희생자들에 대한 사면과 배상, 원상회복[5],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거의 권력에 몸담거나 그 권력의 행사에 관련하여 불의와 부패,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6]과 재산의 몰수등 인적 청산 역시 이 '청산'의 범주에 들어간다. 뿐만아니라 그와 같은 불의와 부패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도구로서의 법률과 제도, 관행의 폐지와 개정등 이른바 법적, 제도적 청산의 형태 역시 피해회복과 배상의 연장선상에 있다.[7]

---

2. 여기서 법률적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언사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어떤 권력남용행위가 범죄라는 법률적 평가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처벌, 피해자의 배상에 대한 권리 인정이 수반된다는 의미이다.

3. Jose Zalaquett, Confro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Former Governments: Principles Applicable and Political Constraints, Aspen Institute for Humanistic Studies Conference on State Crimes, November 4-6, 1988, p.10

4. Jose Zalaquett, 위의 글, p.11

5. 원칙적으로 희생자들의 피해는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법이다. 생명의 박탈,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상처는 영구한 것이다. 따라서 배상과 원상회복이란 가능한 범위안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우루과이에서 민간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배상위원회 설치, 망명자들의 귀국 촉진, 정치적 이유로 퇴직당한 사람들의 원직 복직, 정치범으로 고생한 사람들의 재판 및 수감생활 중의 비용 배상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Jose Zalaquett, 위의 글, p.52)

6.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다시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고 보는 견해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체제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유린과 정치권력의 남용에 대한 죄는 처벌됨으로써 법치주의의 준수와 존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범죄자들의 처벌은 부분적인 치유책이기도 하며 이들에 대하여 지고 있는 국가의 부채이기도 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상의 논의에 대해서는 Alice H.Henkin, State Crimes: Punishment or Pardon -- Conference Report, the Aspen Institute, November 4-6, 1988, p.2 참조)

7.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의 배상등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위



## 2. 미해결의 사건으로 가득찬 한국 현대사

한국의 현대사가 격동의 반세기였다고 말하는데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좌우의 대립, 민족의 분단과 전쟁, 계속된 독재정권과 이에 대한 저항의 과정은 그 자체로서 민족내부에 깊고 깊은 상처들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암살 과 학살[8], 의문의 죽음들[9], 정치적 이유에 의한 테러[10], 부당한 구금

---

하여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로 임명된 테오. 반 보벤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희생자들이 가지는 넓은 의미의 배상(reparation) 또는 구제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Second Progress Report Submitted by Mr.Theo van Boven, Special Rapporteur, 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9 July 1992, E/CN.4/Sub.2/1992/8, pp.22-23 참조)

1. 현금 또는 그에 유사한 형태의 배상. 후자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료, 고용, 주택, 교육등의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한다.
2. 비금전적 배상형태로서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와 평화의 목적에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1)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2) 범해진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
   (3) 책임자의 처벌
   (4) 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5)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6) 희생자들을 돌보는 기관의 설립과 지원, 그들을 돕는 요원의 훈련
   (7) 다음 수단을 포함하는 침해의 재발방지조치
      A.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 특히 민간 통제하에 두는 일.
      B. 군사법정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
      C.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D.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E.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F.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일

8. 학살사건만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이 가운데 제대로 진상이 확인되고 배상과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를 발견할 수 없다. 6.25전쟁을 전후하여 군.경.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된 인원이 100만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정희상,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6.25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르뽀, 돌베게, 1990) 또한 최근에는 제주 '섯알오름'에서 1백32명의 민간인이 예비검속이라는 명분으로 군경에 의해 연행된 뒤 1950년 8월 20일 집단총살된 사건이 발굴되기도 하였다.(1993년 8월 24일자 동아일보 기사)

9. 과거의 의문사는 제대로 알려지거나 통계자료조차 남아 있지 않다. 다만 80년대 후반 조직된 유가족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학생,노동자,군인등 정치적이유로 인한 의문사 사건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 널리 알려진 대표적 사건으로 서울대 최종길 교수사건과 장준하선생사건등을 들 수 있다. 중앙정보부에서 수사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최종길교수사건은 1988년 카톨릭 사제단에서 고발하였으나 형사처벌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검찰의

과 재판, 고문[11]과 처형등이 줄을 이었다. 권력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쿠데타와 반역의 음모에서부터 무고한 이름없는 시민의 인권유린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원한과 분노와 억울한 사건들이 쌓여 있다. 당연히 그 시대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졌어야 마땅할 일들이 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영향으로 말미암아 은폐되거나 미온적으로 처리됨으로써 다음 시대에 큰 짐으로 넘겨져 왔던 것이다. 이 사건들은 그 희생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유족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의 멍에를, 우리 사회에 어둠의 그림자를 남기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처와 고통들은 사건 당시부터 은폐되거나 왜곡되기 일쑤였다. 이른바 반공이데올로기와 이에 터잡아 승계를 거듭한 군부독재정권은 과거의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에 관하여 달가워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지적은 비단 김구선생 암살사건에 한정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 "- - - 그리하여 이 나라는 천인이 공노할 살인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치권력의 줄만 든든하면 처벌은 커녕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범죄자들의 낙원이 되고 말았다. 4월혁명으로 이승만정권이 무너진 뒤 역대정권이 바뀔때마다 김구 선생의 암살배후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의 여론이 빗발쳤으나 언제나 정부당국자들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효만료니 일사부재리 원칙이니'하면서 회피하는데 급급해 왔다."[12]

수사결과발표로서 더 이상 수사되지 못하였다.(뉴스메이커 1993년 5월호 참조) 장준하씨사건은 타살의 가능성이 많다는 서울방송의 보도와 그렇지 않다는 월간조선 사이의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시사저널 1993년 5월 20일자 pp.32-33 참조)

10.예컨대, 1965년 동아일보 간부들에 대한 납치.테러사건이 있다. 이사건은 최근 전 체육청소년부장관까지 지낸, 사건 당시 육군모방첩부대 소속 대위였던 이진삼씨의 개입의혹으로 널리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1993년 7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 참조)

11.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의 역사는 일제시대와 해방직후부터 시작된다. 고문에 의한 사망사건등은 자유당정권에서부터 유신정권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된 고문사건들은 5공말기의 김근태, 권인숙, 박종철씨사건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5,6공 당시의 고문 피해자들의 정신질환 후유증이 계속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인용한 문국진씨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투신자살한 최동,전희식,김복영,강환웅씨등이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는 고문피해자고발센터를 열었으며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이 만들어져 고문피해자 조사와 제소 도움을 주고 있다.(1993년 10월 18일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12.곽태영, "백범 암살배후 이번엔 밝혀야", 한겨레신문 1992년 5월 10일자 칼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해자 자신들이 정치권력을 계속 장악하거나 그 후계자들에 의하여 장악되어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거의 정치적 범죄에 대하여 추궁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정치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이나 지식인들조차 감히 그 혹한의 세월동안은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하여 진실을 말하거나 진상을 추적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균열이 오기 시작한 것은 1987년의 이른바 '6월 항쟁'과 이로 인한 군부독재정권의 붕괴였다.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온 냉전과 반공이데올로기의 해체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에 의하여 갇혀 있던 진실과 그것에 대한 갈망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다. 몇몇 언론에서 인권침해사건를 자유로이 다루기 시작하고, 얼어있던 사법부가 긍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러나 제6공화국이나 김영삼 정권 역시 직선제 정부 또는 민간정부 그 어떤 이름을 불이건간에 실제 이러한 과거의 청산에 대한 의지와 관심에 있어 과거의 정권과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같은 사건 가운데 이른바 '거창양민학살사건' 하나[13]를 예를 들어 과거 한 시대의 범죄행위가 어떻게 역대정권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내려올 수 있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은 자유당정권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양민학살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719명의 양민이 학살되고 이를 진상조사하러 나선 국회조사단에 까지 공비를 가장하여 사격을 가한 이 사건은 이미 자유당 정권하에서조차 관련자 수명이 구속되어 재판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군법회의에서 진행된 이 재판은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을 뿐만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3명의 피고 역시 1년만에 석방되고 말았다.[14]

13.6.25를 전후한 시기에 군인.경찰.우익단체에 의하여 학살당한 민간인만도 1백만명에 이른다는 조사보고가 있다. (정희상,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 6.25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발굴르뽀, 돌베게, 1990) 위 책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놀라움을 토로하고 있다.

> "경북 문경, 대구, 부산, 경남 김해군 진영, 경남 충무, 경남 거제, 전남 함평, 경남 산청.함양.거창을 현지 취재하면서 필자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사실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은폐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놀라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 해당했던 사람들조차도 군.경.우익단체에 의해 수십만의 민간인이 학살되었음을 시인하는 증언을 접하면서 그 희생된 죽음의 숫자가 1백만에 이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위의 책, 서문에서)

"그러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우리의 귀에 익은 '은폐.조작'이 제멋대로 행해졌다. 얼마나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으며 학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국회의 논의는 용두사미가 되고, 부산정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한 두 관리의 얼굴을 바꾸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 - - 연이어진 군지휘관들에 대한 재판 역시 이와 크게 다른지 않았다. 주시하는 여러 눈들을 가리기 위한 판결에 그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모두 화려하게 복귀했다. 오직 죽은 사람만이 원통해 하고 말 일이던가?"[15]

4.19혁명에 이르러 삼엄했던 자유당정권하에서 숨죽이고 있던 유족들은 비로서 한맺힌 자신들의 사연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유족들은 조심스럽게 국회에 이사건에 대한 진정을 하였고 국회는 1960년 5월경 조사단을 파견해 무고한 양민학살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새로 들어서는 민주당정부에 이관한 채 더 이상 사태진전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5.16쿠데타는 유족들을 더 큰 절망의 심연으로 빠뜨리고 말았다. 국회에 진정한 유족대표를 포고령위반으로 구속하는가 하면 합장해둔 묘지조차 파헤쳐버렸던 것이다. 10.26을 거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서 이들은 정부에 위령비 복원과 위령회관 건립, 위령재단 설립을 탄원했다. 내무부에서는 "이해는 가나 불온세력이 군을 악선전할지 모르므로 양해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회신뿐이었다. 1988년 11월 광주학살·5공비리청문회가 열리기 시작하자 고무를 받고 또다시 진정과 시위로 이 문제의 해결을 정부와 각계에 호소하고 다녔다. 역시 어느 곳에서도 관심은 없었다.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은 좌절과 시름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들에게 또한번의 희망을 주었다.[16] 이들은 배상조치와 기념관 건립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별입법의

14. 당시의 사건 진상과 이에 대한 자유당정권의 호도책, 미온적인 재판과정과 그 결과등에 관해서는 김원기, 비화 제1공화국, 동아일보 1974년 3월 19일부터 같은해 4월 19일까지의 '거창사건'의 연재기사 참조.
15. 노민영.강희정, 거창양민학살 -- 그 잊혀진 피울음, 온누리, 1988, 서문에서
16. 유족들의 분위기를 어떤 잡지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른바 '거창양민학살사건'이라고 알려진 51년의 겨울의 끔찍한 사건은 그 유족들에게 지난 42년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왔다. 그 때문에 '문민시대를 맞아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이 이곳 유족들에게 때늦은 회한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시사저널 1993년 6월 3일자, p.42)



제정을 목표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집요한 로비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들은 이미 1988년 여소야대 정국 당시에도 거창출신인 김동영의원의 주선으로 평민·민주·공화당이 합의해 특별입법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바 있었다. 전문 26조와 부칙 1조로 구성된 '거창사건배상특별법안'은 "국가 또는 정부는 국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수행 목적과는 반대로 고의적으로 거창양민들을 비참하게 시살하고 사건의 시말을 조작 날조하여 사상자와 그 유족들에게 누명을 씌워 은폐하고, 전가옥 식량 가재에 방화 소실 및 가축을 약탈한 범법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사상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재산피해 위자료 실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3조)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 출범후 민자당 이강두의원등은 그 법안의 제목 자체를 '거창사건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바꾸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배상'대신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거창사건 유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등 본질적 내용을 변질시켜 국회에 제출하였다.[17]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여야 모두로부터 별반의 관심을 얻지 못한 채 폐기됨으로써 거창사건의 유족들은 또다시 절망의 심연속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 3. 과거청산의 법적 도구, 그 유용성과 한계

### (1) 개 관

위와 같이 오랜 세월이 지난 사건들을 오늘날 재조명하여 법적 처리를 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과거 잘못된 법률과 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아 처형되거나 수형생활을 한 경우 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방법이 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고문등의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그 사건의 수사개시 또는 재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 그것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17. 이 법안은 '거창사건'자체를 "공비토벌을 목적으로 국군병력이 1951년 2월 9일, 10일, 11일에 걸쳐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작전수행 중 과잉작전으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제2조 제1항)으로 규정하여 학살사건으로서의 성격을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언제나 부닥치는 것은 과연 재심절차가 효과적으로 그같은 원죄(寃罪)사건을 다시 재판하여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제도인가, 민형사상의 시효제도에 의하여 더 이상 문제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가, 국가의 책임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겠는가, 과연 현재의 경찰이나 검찰등 수사기관이 성실하고도 단호한 조사를 하겠는가하는 것들이다. 적어도 현재의 법률체제와 그 운용과 관행은 위와 같은 구제조치를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체제에서 실효성있는 인권구제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이 점에 있어서 종래의 확립된 법률과 제도의 변경, 새로운 해석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제도들의 운용현실, 한계와 함께 새로운 이용가능성도 간략히 검토해 본다.

### (2) 재심제도

권력남용에 따른 인권침해와 국민의 희생이 대체로 법률이라는 이름과 사법부 판결, 결정이라는 권위에 의해 정당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수없이 양산된 양심수의 구속과 처벌이 바로 법관의 서명날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당하지 못한 법률, 위법한 수사·재판절차에 기초한 이와같은 구금과 판결은 사실상 위법 부당한 것일 수 밖에 없었다.[18]

이러한 위법 부당한 재판에 의한 인권유린사건은 현재의 소송법 제도하에서는 재심제도에 의해 구제받지 않으면 안된다. 재심은 일단 확정된 재판을 바로 잡아서 중대한 인권유린을 구제하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다.[19]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을 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보다 큰 형사소송법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주의의 이념 때문에 근대국가에서 재심제도는 거의 예외없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20]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8. 이러한 사실은 일부 법관들 스스로가 자인한 바였다. 소장법관들의 '사법부 개혁건의서'의 일부 내용이 잘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법의 이름을 빌려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기본권을 유린할 때, 민주적 기본질서와 기본권 수호를 1차적 임무로 하는 사법부는 마땅히 '그것은 법이 아니다'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절 우리 사법부는 그와같은 선언을 침묵으로 대신했고, 나아가 '그것이 정의'임을 선언할 것을 강요하는 현실의 정치권력 앞에 무력하기도 했다." ( 1993년 6월 10일자 조선일보)
19.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5, p.592



가.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때 (형소법 제420조 제1호)

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동조 제2호)

다. 무고로 인하여 유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동조 제3호)

라.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 동조 제4호)

마.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동조 제5호)

바. 원판결·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동조제7호)

우리의 재심제도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추어 그 자체가 크게 부당하거나 후진적인 것은 아니다.[21] 그러나 종래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재심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가능성은 우리의 현실여건에 비추어 보면 극히 적다. 첫째, 대부분의 확정된 사건들이 제대로 물증과 인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보면 위조·변조한 문서, 허위로 한 증언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예컨대, 웬만한 국가보안법사건은 별다른 물증없이 공범인 상피고인의 진술이 상호 보강증거가 되거나 사소한 유인물 그 자체가 증거가 되어 유죄선고를 받았던 것이다. 둘째, 관여된 법관, 검사, 경찰관에 대한 직무상의 범죄를 드러내어 조사하고 고소하여 이를 유죄판결까지 받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검사는 이를 묵인하고 판사 역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호소에도

20. 日本刑法學會, 刑事訴訟法 講座 第3卷, 有斐閣, 1964, p.191
21. 그러나 영미법계의 경우는 훨씬 재심사유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판사가 배심원들을 비밀스럽게 만남으로써 강한 선입견을 남긴 사실이 드러나 21년동안의 감옥생활을 하던 죄수가 풀려나기도 했다.(Dennis Riodan, "Freedom for Johnny Spain: The Final Push", Stanford Humanities Review, Vol.1 No.5, 1990, p.19이하)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심리하지 않음으로써 조작된 사건이 그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다[22]. 그러나 고문한 수사관을 찾아 고소하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까지 그와 같은 직무범죄 은폐에 능숙하였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사법부의 과오에 대해 시인하기를 꺼려왔던 법관들의 입장 역시 재심제도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아닐 수 없다. 세째, 사건당사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은 재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금전, 의지를 갖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목격한 검사와 법관에 대해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며 그들을 상대로 한 어떠한 문제의 제기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뿐만아니라 통상의 재판보다 까다로운 재심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입수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보조할 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네째, 이러한 당사자들을 고무하여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재심을 제기하거나 재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권단체나 사회운동단체[23], 또는 지성인 그룹들이 전혀 부재하다. 또한 가장 큰 역할을 하여야 할 변호사단체의 관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24] 이러한 현실은 극히 미미한 재심제기율, 재심인용사례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25]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재심의 신청을 용이하게 하는 특별법의 제정 또는 재심제도의 개혁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22. 사건의 조작에는 고문에 의한 적극적 조작, 예단에 의한 편파 수사, 그리고 자백편중의 경향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佐藤友之, 冤罪の 戰後史, 圖書出版社,198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모든 형태가 대부분의 사건에 결합되어 있어 억울한 사건이 일본 보다 훨씬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3. 일본만 해도 소화 48년 이른바 '白鳥事件'의 재심을 구하는 운동이 높아가는 가운데 松山, 島田, 帝銀事件등의 구원활동에 참가하던 사람들이 함께 "재심을 구하는 운동을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발전시킬 목적"으로 再審事件全國連絡會가 결성되어 많은 활동을 해 오고 있다.(五味武司등, 日本の 冤罪, p.16) 또한 1969년 3월에 발족한 원죄사건구원연락센타는 "1.1인의 인민에 대한 탄압도 전인민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한다. 2.희생자의 사상 신조의 여하를 묻지 않고 구원한다"라는 2대원칙을 가지고 활동을 벌이면서 각 지역에도 연락센타를 세웠다.(위의 책, p.89)
24. 역시 일본의 경우,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인권옹호위원회의 한 부서로서 존재하는 재심부회(제1부회)를 통하여 수많은 재심사건을 접수.조사.처리해왔다. 소화 57년 한해 재심사건의 관련기록 등사, 조사여행비용, 담당위원수당등으로 1,670만엔을 지출할 정도였다.(伊藤和夫, "日弁連と 再審の 歩み", 위 日本の 冤罪, p.207)
25. 참고로 재정신청사건숫자를 보면 1976년 31건, 1977년 29건, 1978년 45건, 1979년 9건, 1980년 28건, 1981년 25건, 1982년 82건, 1983년 37건, 1984년 25건, 1985년 30건등이다.(법원행정처, 사법년감, 1986, p.378)



**(3) 시효문제**

지독한 인권유린과 참혹한 피해를 당하고도 오랜 세월동안 숨죽인 생활을 해왔던 희생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이제, 어떠한 법률적 구제조치에도 당장 걸리는 문제가 바로 시효제도이다.

김근태씨에 대한 고문혐의로 수배되어 있는 이근안 경감과 관련하여 공소시효문제가 일반에게 널리 관심을 끌고 있으나[26] 사실 공소시효는 수많은 정치적 사건에서 계속 논란되어 왔다. 형사상의 공소시효는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최고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15년을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만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신 시절 이전의 모든 정치적 범죄들에 대한 소추는 현행 소송법상 불가능해 지고 만다.

이와 같은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 취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공소시효의 근거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불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시간적 경과에 의한 가벌성의 감소[27], 증거의 산일(散逸), 이외에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복합적 요소가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8]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소시효제도의 근거는 적어도 한국현대사에서 벌어진 많은 정치적 범죄의 경우에 해당될 수 없다. 다수의 사건에서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도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는 경감되어 오지 않았고 국가가 수사와 소추를 마음만 먹는다면 증거는 있을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고통받기는 커녕 국가적 보호의 울타리속에서 권력과 부를 향유해 왔던 것이다.

공소시효가 결코 천부의 제도라든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절대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수의 영미법계 국가들[29]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시효제도를 가지고 있

26. "이근안 왜 못 잡나 -- 도피 5년째, 수사 제자리 걸음"(1993년 2월 28일자 중앙일보 기사), "수배 5년 - - 이근안 안잡나 못잡나, 제자리 맴도는 검.경수사"(1993년 3월 1일자 경향신문 기사)등의 기사에서 이근안 경감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다.
27. 여기서 가벌성의 감소라는 것은 범죄의 사회적 영향의 미약화, 즉 피해감정이나 사회적 응보 감정의 희박화에 의한 처벌가치의 체감을 의미한다.(青柳文雄외, 註釋 刑事訴訟法 第2卷, 立花書房, p.361)
28.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88, p.369

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특히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와 관련하여서는 대륙법계[30]와 영미법계를 불문하고 공소시효를 철폐하거나 제한한 사례가 대단히 많다.[31] 이러한 국가적 관행을 조사한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시효에 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 "형사 사건에 있어서 시효제도는 '정의의 요구'가 아니다. 이 제도가 약간의 국내법 체계 속에 자리잡게 된 것은 대단히 힘든 과정을 거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의 일'인 것이다. 더구나 공소시효제도는 모든 국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수많은 국가가 전혀 그러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거나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32]

이것은 결코 공소시효가 모든 범죄의 도피처 또는 방파제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소시효제도는 오히려 정의의 실현에 대한 하나의 장애물이며 불의의 의지처에 다름 아니었다. 법률적으로 평가하더라도 공소시효제도가 헌법에서 예상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잔혹한 정치적 범죄, 학살행위,

29.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없앰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오판의 위험성을 엄격한 적법절차의 보장과, 시간이 경과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가 현출불가능한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에 의하여 제거하고 있다.
30. 독일의 경우 1969년 나치범죄자들의 처벌을 위하여 공소시효의 기한을 1979년까지 연장하였다가 1979년에 이르러 살인죄에 한하여는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는 입법조치를 취하였다. (Robert A.Monson, "The West German Statute of Limitations on Murder: A Political, Legal, and Historical Exposition,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30, 1982, p.605 이하 참조)
31. 유엔사무총장이 조사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죄에 관하여 원래의 법률제도 또는 특별입법때문에 공소시효가 없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인디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케냐, 나이지리아, 폴란드, 싱가포르, 우간다, 볼리비아,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소련, 영국, 미국등이며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들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없앤 나라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들란드, 독일등이다.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가 국내법상 적용된다고 한 나라는 캄보디아, 카메룬, 일본, 말타, 모로코,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터어키, 베네주엘라등이다.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Question of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E/CN.4/906, 15 February 1966, p.53 참조)
32.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위의 문서, p.117



가혹한 고문행위등 일정한 경우에 대한 공소시효제도의 제한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적 질서의 구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3].

민사상의 시효제도의 취지도 형사상의 공소시효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존재이유로서 첫째, 일정한 사실관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생기게 된 사회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둘째, 그동안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며, 셋째, 오랜 기간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34] 그러나 이역시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인권유린사건이나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는 위와같은 시효제도의 일반적 존립근거가 설득력을 잃는다. 이들 희생자들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단정한다는 것은 난센스이기조차 하다. 더구나 시효제도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불의에 기초한 질서라고 할 때 오히려 그러한 질서는 번복될 필요성 조차 있는 것이다.[35]

33. 소박한 견해이기는 하지만 공소시효의 문제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 "역대정권들이 내세워온 바대로 '법'이 문제이고 '공소시효'가 문제라면 특별법을 제정하면 된다.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암살을 공모하고 실행한 자들, 그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자들, 암살자를 보호해온자들을 남김없이 밝혀내어 심판해야 한다.- - - 그리하여 반역의 말로가 어떠한지, 역사를 거스른 죄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들 가슴에 새겨야 한다. 그래야만 역사가 살아 숨쉬게 되고 민족정기 또한 생동하게 되는 것이다."(권중희,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돌베개, 1993, p.16)

34. 주재황외, 주석 민법총칙(하),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 pp.630-631 및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75, p.491
35. 1993년 12월 15일자로 '일제하의 강점기에 있었던 독립운동, 반민족행위와 관련한 민족사 왜곡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민족정통성회복특별법안'은 시효제도 배제와 재심개시의 특례등을 규정하는 획기적인 것이다. 이 법안의 중요조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제3조 (제한 적용) 1. 국회는 민족사의 정통성회복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재조명 및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 2. 국회는 조사결과 법원(헌법재판소 포함)의 사법절차를 거쳐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민사시효 배제)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있어 재산권에 관련된 민사시효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형사시효와 조사)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때에는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추 처벌할 수는 없다.
> 제6조(재심사유) 국회에서 위 제3조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상 재심개시된 것으로 본다.

### (4) 특별검사제도

지난 1988년 6공화국의 출범 이후 쏟아져 나온 과거사 정리,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불신과 함께 특별검사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988년과 1989년 사이에 이른바 '5공비리'의 수사를 둘러싸고 특별검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뜨거운 것이었다.[36] 실제로 이당시 조승형의원등 67인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37]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특별검사제가 아니라 다수의 특별검사와 수사대로 구성된 특별검찰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38] 그 이후에도 특별검사제 요구는 줄기차게 터져나오곤 하였으며[39]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일 때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인권유린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구속·기소·처벌된 사례들에는 대체로 경찰·안기부(중앙정보부)등에서의 가혹한 고문이 검찰에 의하여 묵인 또는 은폐의 노력이 개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을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사·처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새로운 정부하에서도 검찰의 인적, 제도적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정치적 사건, 인권유린사건을 검찰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검사제의 요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36. 그당시 특별검사제는 단순히 재야단체의 주장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당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였다. 다음은 당시 민주당 총재였던 김영삼 대통령의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자유언론회, 자유언론 1989년 1월호, p.42 이하)

"특별검사제와 전두환.최규하씨의 국회청문회 출석이 5공비리처리의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 - 제가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는 삼권분립에 위배가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게 아니거든요, 특별검사는 물론 국회가 추천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해서 조사를 벌이고 일단 조사결과만 국회에 넘겨주면 국회에서 질의를 벌이는 겁니다. 특별검사는 정부의 어떤 기구라도 전부 다 지휘,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수사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37.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고문등 인권침해사건과 권력형부정비리등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국회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검찰권을 발동하여 5공청산에 과감히 나설 것을 촉구하여 왔으나 정부의 5공청산의지 결여와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5공청산작업이 한계성을 노정하게 되었으므로 국회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의 한계성과 검찰의 무력성을 극복하여 조속히 5공청산작업을 마치고 민주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유한 특별검사제도를 채택하려는 것임"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44회국회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p.3)

38. 1989년 2월 1일자 한겨레신문 사설

39. 예컨대,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수사를 놓고 재야법조계와 학계인사들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1992년 9월 17일자 동아일보 기사)



다.

이 제도의 도입이 우리의 헌법체제하에서 가능한 일인가. 특별검사제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논쟁의 여지와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을 정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들을 침해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삼권분립 그 자체의 취지가 권력의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에 있다고 볼 때 형식적이고도 무조건적인 분립만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의 헌법체제하에서도 특별검사제 도입은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40] 미국의 대법원판결이 특별검사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도 바로 이같은 헌법해석에 근거하고 있다.[41]

### (5) 국제법상의 근거와 그 이용가능성

대체로 권력남용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 행위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바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하는 일반적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개별적인 협약과 조약에 의해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제인권규약 제2조는 당사국이 그 규약에 인정되고 있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고 억지하기 위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규약은 또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당연히 그 구제의 수단이 된다.[4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 끝에 '과거청산'의 한계를 느낀 남미의 인권단체들이 국제적 인권 기구와 협약에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주조약(The Organizations of the American States)에 의하여 창설된 미주인권

40. 김창국, "특별검사제도입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1991년 9월 9일 및 9월 12일자 논문도 같은 취지임.

41. 미국의 법무차관이었던 T.Olson이 1983년 환경보호국 분쟁과 관련하여 행한 의회증언이 위증인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검사 Morrison이 임명되자 Olson이 특별검사제를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내려진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미국대법원은 "이 법은 헌법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임명조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보장된 권한의 침해로 인해 권력분립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자세한 것은 Earl C.Dudley,Jr., "Morrison v.Olson: A Modest Assesment", The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Vol.38, 1989, p.255이하 및 진정구 편,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월보, 1988년 10월호, p.85 이하 참조.

42. Alice H.Henkin, 위의 글, p.5

협약(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과 인권위원회, 인권재판소등이 이들의 일차적 호소대상이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실종사건'들이 인도에 대한 죄이며 해당정부가 그러한 범죄를 수사, 기소하고 처벌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권유린의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법령이 그 자체로서 불법적이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권유린사건들은 인도에 대한 죄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법 2차세계대전 이후 확립되기 시작한 국제조약과 관습법에 위반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다.[43]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많은 학살사건, 고문사건등도 이러한 법해석에 따라 '인도에 대한 죄'로 평가하여 시효부적용, 보편적 관할권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권유린사건의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과 면책의 광범한 세계적 현상은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논의 항의에 직면하였으며[44] 마침내 유엔의 인권관련 기구들에서도 정식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대책이 마련중이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2년 이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인권범죄 면책의 현상, 처벌확보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기준등에 관하여 최근 중간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다.[45] 뿐만아니라 2차세계대전 이후 인권범죄의 처벌을 위한 국제상설재판소의 설치를 위한 노력 역시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진전은 인권범죄가 결코 한 국가의 주권의 울타리안에 방치할 수 없다는 자각에 따른 것이다.

## 4. 김영삼 정권과 '과거청산'의 시종

43. The 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 Issues in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lected Civilian Governments in Latim America, p.13.
44. 이에 관한 논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쌓여 있다. 최근 아시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논의와 요구들이 대두되고 있다. 인권범죄자들의 처벌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Institute for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ecommendations of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 Law-Making and Transition to Democracy, 1991, Kathumandu, pp.14-17 참조.
45. Commission on Human Rights, Progress Report on the Question of the Impunity of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ors Prepared by Mr.Gisse and Mr.Joinet, E/CN.4/Sub.2/1993.6



### (1 김영삼 정부하에서의 '과거청산' 시발

새로이 등장한 김영삼정권의 '개혁'은 필수적으로 '과거청산'으로부터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자칭 '문민정부'로서 구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과거'의 정리를 통하여 현정권의 기반 형성을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과거 지배집단을 구성하면서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던 기득권층의 부분적 균열과 와해는 이들이 금기시해 온 제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지난 시대의 많은 불의와 구정권이 저지른 비리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진상이 드러나거나 새로운 해석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의 현대사의 여러 부분과 사건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가열되었다. 과거 항일투쟁을 하였다고 하여 독립유공자로 지정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친일행적이 드러나 그 보훈을 취소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있었다.[46] 미술계 일각에서는 김기창 화백의 그림이 친일적이라 해서 그의 갤러리 건축을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과거 친일부역자들이 각 분야를 장악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실의 발굴과 재해석의 시도는 그 자체로서 적지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47]

한편으로 국회에 의해서도 과거의 중요한 역사적 사안에 대한 조사특위가 생겨나거나 결의안 제출등이 이루어졌다. 이완용의 손자가 토지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이를 막는 특별법제정활동이 있었고[48] 또한 김구의 암살배후 은폐문제와 관련하여 암살범 안두희에 대한 조사활동[49]도 있었다. 최근에는 여야의원 74명에 의하여 국회에 '4.3 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50]

46. 이런 일들을 두고 조선일보의 사설은 "지금 우리는 온통 전력시비와 과거시비에 몰두해 있는 것 같다"고 쓰고 있다.(1993년 7월 12일자 조선일보 '역사논쟁 고(考)'라는 논설)
47. 그동안 "우리 역사학계가 현실회피적 생리와 진실규명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1993년 7월 26일자 동아일보 사설)을 듣고 있던 터였다.
48. 위에서 본 '민족정통성회복 특별법률안'이 그것이다. 이 법률안은 "구한말 이후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독립운동, 다른 한편 매국적 반민족행위와 관련한 민족사의 왜곡을 시정하고 정통성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목적으로 하여 민사시효 배제, 특별검사임명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49. 1992년 11월 6일 '백범김구선생 시해진상규명위원회'회장 이강훈등 23인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에 따라 국회 법사위가 1993년 12월 15일 '백범김구선생 시해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으며 1994년 1월 4일 1차조사작업으로 안두희에 대한 증언청취가 있었다.
50. 1994년 2월 3일자 동아일보 기사.

### (2)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매몰되는 '과거청산작업'

그러나 새정부의 개혁과 사정활동은 주로 과거의 뇌물수수등의 비리에 집중되었고 국민들의 원한이 사무친 인권유린사건, 정치적 테러사건등은 거의 백안시되었다.[51] 구시대의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왜곡되고 조작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라든가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고문사건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된 것이 없었다. 이미 널리 알려지고 재판에 회부된 김근태고문사건의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법정구속이 고작이었다.[52]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토록 가혹한 고문이 행해져 그 '독열매'로서 김근태씨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제기[53],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판결은 아무런 영향도 없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과거청산작업을 포함한 이른바 개혁정책은 곧바로 여러 곳으로부터 반발과 저항을 초래하면서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그 무엇보다도 개혁의 주체세력인 집권당 자체에서의 조직적인 저항, 관료들로부터의 사보타아지가 잇따랐다.[54] 교육, 노동, 통일등 많은 분야에서 기득권과 수구세력의 반격에 맞부닥친 현정권은 결국 개혁의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청산과 개혁의 한계는 외부의 영향과 압력에서라기 보다는 김대통령과 집권세력 그 자체의 한계와 속성에 기인하는 바도 적지 않았다. 이른바 12.12사태에 관한 김영삼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견해가 그같은 점을 반영하고 있다.

"해방 이후 정치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5.16, 10월유신, 12.12

51. 법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새정부가 출범한 1993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2천93명이 구속되었는 바 인허가와 뇌물수수등에 연루된 공직자 3백5십명, 금융부조리와 교육비리에 연루된 사회지도층 인사 1백6십7명, 기타 비리 연루자 1천5십6명이었다.(1993년 7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
52. 1993년 8월 23일 그동안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는 고문경관들이 항소심의 선고공판에서 전원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것이다.(1993년 8월 24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
53. 김근태씨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관한 변호인들의 변론요지서 (김상철, 정의로 가는 길, 1988, p.246)
54. 김영삼정권의 이같은 한계는 태생적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즉 민자당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김영삼정권이 개혁을 내세웠으나 개혁을 위한 인적 대상은 바로 민자당의 민정,공화계로 상징되는 구정권의 인물들이며 그들이 바로 현정권을 탄생시킨 중심인물인데다가 아직도 정부와 당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1993년 11월 8일자 한겨레신문 논설)



사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새 정부는 나름대로 정치적 평가를 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학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5][56]

이것은 '말'에 의한 '정치적' 평가에 만족할 뿐 법률적 청산은 안중에도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더 이상 수사를 벌이고 형사적 소추를 단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1993년 5월,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등이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에 대하여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57]. 특히 김대통령은 율곡사업 감사와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라"는 지시[58] 를 내림으로써 사실상 전직대통령은 조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마침내 김영삼대통령의 '미래지향적' '국제화'선언으로 그동안 들먹여졌던 과거청산의 문제는 또다시 역사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집권당에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는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 역시 이 선언에 사실상 동조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서 과거문제가 재론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59]

## 5. 외국에서의 경험과 사례

55. 1993년 7월 24일자 한국일보 기사
56. 광주문제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김대통령은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이며 "진실은 역사속에서 반드시 밝혀지고 만다는 것이 자신의 확신"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담화는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을 크게 실망시켰다.(안병찬, "역사의 심판이 필요하다", 시사저널 1993년 6월 24일자 시론, p.96)
57. 이른바 '12.12사태'의 공소시효는 1994년 12월 13일로서 이제 겨우 10개월여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사건에 기울이는 검찰의 성의는 미약할 뿐이다.
58. 1993년 7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
59. 이기택 대표는 당초 '미래지향노선'을 내세웠다가 당내 비주류와 개혁의원모임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여 일부 후퇴한 사실이 있다.( 1993년 11월 8일 한겨레신문 기사)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비주류와 개혁의원모임 역시 과거청산문제에 대해 신선한 정책과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과 민자당이 주도하는 '국제화' 물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1) 살아나오는 역사

냉전의 빙벽이 녹아내리면서 전 세계에 걸쳐 그 뒤에 갇혀있던 진실이 살아나오고 억울한 사연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컬럼부스 아메리카대륙 상륙 5백주년을 맞이하여 1993년 한해는 학살자로서의 컬럼부스와 초기 유럽이민자들의 역할이 선명히 부각되는 작업이 전세계적으로 계속되었고[60], 역시 호주의 개척자로서 그 원주민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캡틴 쿡'의 죄과가 3백년의 세월을 넘어 고발되기도 하였다.[61] 보다 최근의 과거사 문제로는 1950년대 미국에서 벌어졌던 메카시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복권이었다. '세기의 재판' 또는 '원자폭탄 케이스'로 널리 알려져 있는 로젠베르크 사건이 지난해 8월에서 열린 미국변호사협회 연례총회의 모의재판에 올라 무죄가 선고되었다[62]. 또다른 유명한 '알제르 히스'사건 역시 소련 KGB 문서보관소 책임자의 증언으로서 그가 당초 혐의를 받았던 소련을 위한 간첩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기도 하였다.[63]

대만에서도 역사의 오류에 대한 시정작업이 진행되어 지난 1947년 국부군에 의해 학살된 10여만명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약 7천6백9십2만달러를 배상하는 조치가 1993년 6월 10일 확정되었다.[64] 러시아정부 역시 스탈린 통치시절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한인동포에 대하여 1993년 4월 명예회복조치를 취한 데 이어 손해배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65]

이와 같은 전세계적인 '과거청산'작업은 사실상 나치범죄자 처단의 집요한 노력과 맞닿고 있다. 이미 50년 이상이 흘러버린 과거사에 그토록 메달린 이유는 나치희생자들의 사라지지 않는 고통과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재연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인류의 결의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지가 유태인 생존자와 그 동조자들의 나치범죄자 추적에 나서게 만들었다. 이들의 손에 아이히만이 잡혔고, 바르비가 프랑스로 송환당해 재판받았다. 아흔살이 넘은 '뎀얀유크'라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이 최근 수년간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받아왔으며, 비쉬정권하에서 보로도 경찰총감이었던 르네 부스케가 강제수용소로 유태인을 송출한 혐의로 인도에 대한 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기다리던 중 지난해 6월 암살당했다.

이와 같은 서구의 일반적 역사청산보다는 남미와 다른 지역에서 군사독재정권이 무너지거나 민간정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과거 자행되었던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처리를 둘러싼 논쟁이야말로 우리에게 보다 시사적이라고 할 것이다.

### (2) 남미등 대규모 인권유린국에서의 경험과 교훈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군사정권의 폭압적 통치하에서 대규모의 인권유린을 경험한 남미의 여러나라, 필리핀등에서[66] 독재정권의 붕괴와 민간정부 수립 후 민주화의 과정에서 어떠한 과거청산의 노력을 해 왔는가 하는 점은 우리에게 큰 시사가 될 수밖에 없다.[67]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들 나라에서의 '과거청산'도 결코 성공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지독한 군사독재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철저하게 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았으

60. 미국에만 해도 70개나 되는 도읍이 컬럼부스에서 이름을 따올 정도로 숭앙되던 그가 이처럼 곤욕을 치루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미국땅으로 밀려들던 유럽의 이민들에게는 그가 경배와 존경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남북미주에서 '낙원'의 삶을 즐기고 있던 3천만명의 인디언 원주민의 90%가 향후 100년에 걸친 학살과 유럽에서 옮겨온 질병으로 그 땅에서 사라짐으로써 이것을 '인도에 대한 죄'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학살자, 약탈자로서의 컬럼부스라는 평가에 500년이 걸린 것이다.(Chrisite Davies, "Blaming Columbus", Chronicles, October 1992, p.18 이하, Oswald Iten, "Columbus the Explorer--Hereo or Thief?", Swiss Review of World Affairs, Vol.42 No.8, November 1992, p.13, 및 Mike Gonzalez, "The Bloody Story of Christopher Columbus", Socialist Review, March 1992, p.46 이하등 참조)

61. 호주의 원주민들은 '캡틴 쿡'과 그를 뒤따라 온 백인정착자들을 '인도에 대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로 고발할 것을 언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1770년 '보타니'만에 '캡틴 쿡'이 상륙하기 전 호주는 무인도였다는 원 영국주민의 주장을 뒤엎은 1992년의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에 고무되어 나타난 것이다.(1993년 6월 18일자 The Times 지 논설)

62. 이 사건은 이미 재판당시 논쟁이 있었으나 1953년 6월 원자폭탄 비밀을 소련에 넘겨주었다는 혐의로 쥴리어스 로젠베르크와 그의 처 에델이 처형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 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후 40여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의문은 끊없이 제기되어 왔다. Walter and Miriam Schneir, Invitation to an Inquest: Reopening the Rosenberg 'Atomic Spy' Case, Penguin Books, Baltimore, 1973 및 Stanley Yalkowsky, The Murder of the Rosenberg, 1990 참조.

63. The Boston Globe, 1992년 10월 30일자 기사

64. 1993년 6월 12일자 한국일보 기사

65. 1993년 7월 8일자 한국일보 기사

66. 이 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그리이스, 포루투갈, 스페인등이 1970년대 중반 권위주의적 정부의 붕괴와 더불어 민주적 정부로 이행한 바 있다.

67.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는 그 형태에 있어서 대단히 유사한 폭압을 자아내는 제도화된 폭력의 교재"라고 할 수 있다.(Charles Harper, "Introduction", Behind the Mask: Human Rights in Asian and Latin America, An Inter-Regional Encounter, Human Rights Resources Office for Latin America, World Council of Churches, Geneva) 이러한 점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과정청산의 경험은 우리의 생생한 교훈이 될 수 있다.

며 많은 경우 과도적인 정권에 의하여 사면을 받거나 단지 미온적인 조사과정만을 거쳤다. 이것은 과도정권의 속성과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 즉 이들은 대체로 종래의 군부정권과의 일정한 타협아래 성립된 정권들이었으며 권력 잔류로 군부의 영향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에서의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치열하였으며 때로는 중요한 군사지도자들의 기소와 재판에 성공한 사례들이 보인다. 남미에서 상대적으로 민주화를 이루는데 성공한 몇나라의 예만 들어본다.[68]

가. 아르헨티나

1983년 선출된 알폰신 대통령은 군사정권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이양하기 몇주전 스스로 자신들을 위하여 선포한 사면령을 무효화 시켰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실종사건'(disappearances)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였으며 과거의 인권유린사건과 관련하여 고위 군사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시도하였다[69]. 당초에는 시민으로부터 압력이 워낙 거세어 알폰신 자신이 원했던 것 보다는 더 강한 '과거청산'의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1984년과 1985년에 걸쳐 과거 장군들이 '더러운 전쟁'이라고 불렀던 그 암흑의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계속된 경제적 난조, 무장 반란등은 군부의 재등장 우려를 낳아 의회로 하여금 기소의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만들었고 이로써 아주 소수의 고위 군사지도자들만이 기소되고 증거조차 확보된 다수의 군인들이 그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다[70]. 그당시 두명의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7명의 군부지도자들이 기소되었고 18명이 기소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이어 1989년 등장한 메넴 대통령은 이들의 대부분을 사면하고 말았다. 과거청산작업이 시작된지 6년만에 단지 두 사건만이 유죄로 결론이 났고 5명의 중요 범죄자들이 구금되어 있으며 아르헨티나를 탈출하여 미국으로 왔다가 다시 추방된 카를로

68. 이하의 사례가운데 아르헨티나, 우루구아이, 칠레의 경우는 Human Rights Watch, No.4, Special Issue: Accountability for Past Human Rights Abuses, December 1989 를 정리, 요약한 것이다.

69. 군사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은 서적으로 Amnesty International, Argentina, the Military Juntas and Human Rights:Report of the Trial of the Former Junta Members, London,1987, 논문으로 Speck, P.K, "The Trial of the Argentine Junta: Responsibilities and Realities", University of Miami Inter-American Law Review, 1987, pp.491-534등을 참고할 것.

70. 1987년 알폰신 대통령은 '직무이행법'(Due Obedience Law)을 만들어 중령 이하의 군인들이 직무상의 행동(acts of duty)으로 저질러진 범죄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한 바 있다.(The 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 위의 글, p.14)



스 메이슨 장군 사건도 당시까지 계류되어 있던 사건이었다.

나. 우루과이

우루과이에서 '과도정권'의 성격은 장래의 정부가 희생자들이 제기하는 경우외에 과거의 인권유린 사건을 스스로는 절대로 파헤치지 않겠다고 다짐한 1984년의 군부와 정치 엘리트 사이의 합의에 의해 설정되었다. 그러나 2년동안 의회와 희생자들이 180여명의 군인과 경찰관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놀란 행정부는 그와 같은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국가의 권력은 소멸하였으며 법원에 기소된 사건조차 행정부가 기각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문맹을 제외한 전유권자의 25%에 해당하는 5백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대하여 그 법률이 유효한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강압하였다. 위축된 쥴리오 마리아 상귀네티 정부는 국민투표를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 그대신 그 법안의 거부가 군부의 개입을 가져올 것임을 강조하여 58:42로 그 법안의 유지에 성공하였다.

다. 칠 레

칠레 역시 군사정권 스스로의 손으로 1973년 9월의 쿠데타와 1978년 3월 사이에 벌어진 각종 실종사건에 관하여 자체 사면령을 발포한 바 있었다. 이른바 1978년의 3월 19일의 포고령 2191호가 그것이다. 이 사면령은 칠레 대법원에 의하여 단순히 형벌을 면제할 뿐만아니라 조사의 권한까지 박탈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71] 실종자의 행방 조사까지 법원이 시도하는 것을 봉쇄하였다.

그러나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1973년부터 아일윈 대통령에게 정권을 인계한 1990년까지 16년 6개월동안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과 투쟁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아일윈대통령은 군정하에서 실종되거나 학살당한 정치인, 시민 2천명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특별검사의 임명과 전권을 수여하는 이른바 '아일윈법안'을 둘러싸고 이에 반대하는 군부와 미온적임을 지적하는

71. 이른바 1990년 8월 24일자 Insunza et al vs.Manuel Contreras et al 사건의 판결에서 대법원이 내린 해석이다. 이에 따르면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가해자와 범죄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민사소송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인권단체 쌍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다.[72] 새로운 조사기기관을 구성하려는 이 법안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고[73], 의회의 구성이나 피노체트의 존재로 말미암아 위 사면령을 폐지하거나 이를 위헌선언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199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국가 요원 또는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피해 구제의 방안과 장래의 재발방지책의 건의등이 임무로 주어졌다. 그러나 사법권은 없기 때문에 조사후 통상적 법원으로 이송되게 되어 있었다. 희생자와 그 가족, 인권단체, 군대로부터 접수한 정보가 넘쳐 흘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 위원회는 1992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연금 또는 일시불의 손해배상 지급, 추가적인 사건의 조사등을 가능케 하는 법률 19123호가 통과되어 실시되고 있다.[74] 칠레의 민주화, 과거청산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라. 필리핀

1972년 내려진 필리핀의 계엄령은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전통을 그 한방에 산산조각을 내고 말았다[75]. 그 이후 대규모로 이루어진 일상의 인권유린은 필리핀을 국제인권단체 사이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권오명국의 하나로 올려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1987년 2월의 혁명은 탄압과 빈곤, 부패와 외세의 지배로부터 이나라를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새벽의 약속으로 비춰졌다. 실제로 집권초기에 아키노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의 제정, 인권위원회 설치, 각급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공산당(CPP) 신인민군(NPA)지도자를 포함한 정치범의 석방등으로 인권에 관한 확고한 의지가 드러난 것처럼 보였다.[76]

이러한 기대는 1987년 한해동안 아키노 행정부 정책의 방향과 해석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반란에 대한 '전면전' 정책과 '민간자위봉

72. 1993년 9월 16일자 경향신문 기사
73. 피노체트 정권 아래서 인권유린의 일익을 담당해온 사법부는 권력의 민주화과정에서도 가장 완고한 장애로 남아 있었다. 특히 아일윈 대통령등장 이후 2년간 보여준 대법원의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인식만 확산시켰다.
74. Cecilia Medina, "Chile: Obstacles and Challenges for Human Rights",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Vol.10 No.2, 1992, pp.109-129.
75. Richard Pierre Claude, "Philippines", International Handbook of Human Rights, Edited by Jack Donnelly and Rhoda E.Howard, Greenwood Press, London, 1987, p.279
76. Rosario Garcia & Arnel de Guzman, "Whither Human Rights?", Justice and Peace Review, Vol.4 No.3, 1990, p.7



사자'조직(The Civilian Volunteer Self-Defense Organizations)이 민간인을 무장화하여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식으로 광범하게 새로운 인권침해를 야기하였다.[77] 수많은 종교인, 인권운동가, 시민들이 백주 대낮에 살해되기 일쑤였으며 고문과 정치적 구속자가 늘어났다. 군부의 포로가 된 민간정부의 한계로서 필리핀 사례는 인용된다.

## 6. 결 론

지난 6공화국 정권 당시 이른바 '5공비리'문제와 관련하여 그 완결을 강조하며 당시 노태우대통령은 1990년의 신년사에서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한 전임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지난날의 문제를 밝히고 잘못된 일에 대해 사과한 이제 이 문제에 분명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 - -지난 시대로 또다시 돌아가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어둡게 할 뿐이다.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주고 큰 대가를 치르게 한 지난날의 문제는 이제 역사의 밑거름이 되게 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78] 김영삼대통령도 거의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이미 지적하였다. 그러나 두 대통령의 희망과는 달리 '과거의 문제'는 또다시 살아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종지부'는 '종이 위에 찍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진상의 규명과 법률적 조치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또다시 '의문부호'로 남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원한을 가진 사람들의 요구, 진실과 정의에 대한 갈망은 그 원한과 불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나서서 과거의 과오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새로운 정부가 혁명적 발상과 의지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일 뿐더러 국가는 언제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의 정책담담자들의 성향과 그 한계는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과거의 정치적 사건과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해결의 과제는 오히려 시민운동

77. Report of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Study Mission to the Philippines, January 1988
78. 1990년 1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

과 인권운동단체, 법률가단체등 민간단체들의 두 어깨에 적지 않은 짐이 지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투쟁없는 인권의 보장이 있을 수 없고, 영원한 감시없이 확보되는 자유가 없다는 사실에서 어쩌면 이러한 민간단체의 인권유린사건 청산노력은 정부의 그것에 앞서 끌고 뒤에서 미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거사의 청산작업은 결코 강령적 선언이나 정치적 구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79] 시민의 힘으로 그러한 사건의 피해자들을 조직화해 내고 이를 사회와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일,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과 고발을 제기하는 운동을 전개하고[80], 피해자들의 치유와 생존을 위해 돕는 노력을 다하는 일,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입법운동을 벌이는 일등이 모두 이들 단체들이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하는 일들이다[81].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과 수단은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고단한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사회는 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삶의 질이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79. 예컨대, 사법부의 개혁과 관련한 '정치판사'논쟁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처음 변협은 '정치판사 명단 공개'를 운위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민변 역시 '정치적 판결 사례집'간행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역시 불발이었다. 사법부에서는 "법관은 오직 양심과 용기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므로 정치판사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하면서 과거의 과오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한 태도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당초의 큰소리와는 달리 변협과 민변이 제대로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과연 사법부내의 판사들이 지난 세월동안 보여준 판결의 내용들과 성향, 언동등에 관하여 충분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옥석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이것은 결국 구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축적해 나가는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80. 과거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사법부의 예속성과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인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많아 기피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81. 문국진고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고문피해자보상특별법'제정등 고문피해대책촉구 청원서를 제출하며 사회문제로서 인식시키기 위한 언론활동등 다양한 방식의 운동이 돋보인다. 그러나 더욱 바란다면 위와같은 특별법제정을 청원하기 이전에 우리사회의 고문피해자의 상황과 실태에 대하여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러한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특별법의 초안을 마련한 다음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정식 법안으로 상정되도록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정부의 고문방지협약가입운동을 촉진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순서이고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푸는 과정일 수 있을 것이다.



편지글

#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닙니다

허두측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아르헨티나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한국방문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김종태 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얼굴도 모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한국의 우리들과는 사연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군사독재에 의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며 실종된 가족을 찾아 헤매게 된 어머니들이 바로 아르헨티나의 오월광장 어머니라는 것을 조금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마음이야 부모가 아니면 누가 그 속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웃도 친척들도 형제들도 모를 것입니다. 아픔을 헤아린다고 해도 자식을 잃은 부모마음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뒤 14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주위로부터 동정의 소리를 여러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니 모든 것을 잊고 그런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떠나보낸 어미의 심정은 그것이 아닙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이 먼저 간 자식에 대한 그리움 입니다. 좋은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아들 딸 낳고 천수를 누리며 살다가는 것이 부모의 자식 생각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나라에서는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사람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반인륜적인 국가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자유롭지 못하면 그 어느 것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살고있는 사회가 다르지만 아르헨티나의 오월광장 어머니회와 한국의 유가족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서로가 몰라도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시내 가로수에 초록색 나뭇잎들이 자라고 있는 오월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잊혀져가는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에 위대한 금자탑으로 기록될 광주민중항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던 전두환, 노태우씨를 비롯한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하여 국민들을 총칼로 휘어잡던 1980년 봄, 한국의 역사는 어두운 그림

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남녘땅 광주에서 일어난 피의 항거를 무력으로 제압한 군사독재는 공포정치를 하였고 많은 국민들은 침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분노를 하여 6월 9일 신촌 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광주의 의분을 호소하는 전단을 나누어 준 뒤 온몸에 기름을 붓고 죽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80년 광주항쟁 이후 군사독재에 반대하여 떨쳐 일어선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하던 독재정권시절 가족이 구속되고 잃었어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은 가정주부에서 거리로 무작정 나와 곳곳을 돌아다니며 먼저간 자식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온몸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싸우면서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나이 66세 입니다. 아직까지도 운동의 흐름에 대해 부족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조국의 자주 통일이나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불타는 열정은 누구보다 강렬히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이고 그저 어려운 살림에 혼자 몸으로 자식들을 키우기에 바쁘게 살던 저의 무지한 생각이 결국 자식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늦게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36년 간의 식민통치도 미제국주의의 49년 간의 새로운 대리통치도 모두가 무지하고 각성하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연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어렵게 공부를 하여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나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고 전선운동에 뛰어들어 엄청난 시련을 겪으며 실천하다가 쓰러져간 한국의 독재권력 아래에서 희생된 대표적인 영혼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참담한 조국의 현실을 고발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국민대중을 각성시키고자 자신의 몸을 불사르고 배를 가르며 쓰러져간 분신 할복 투신은 너무도 가혹하고 끔찍한 죽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죽은 자식을 너무도 원망하였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살아서 싸워야지 왜 죽느냐는 생각을 여러번 가져보았으나 그것은 죽은이들의 마음을 몰라서 하는 무지렁이 마음일 뿐 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연들을 보고 접한 저로서도 기가막힌 상황들을 접하노라면 문득문득 살아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분노와 증오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누구보다 최선봉에서서 움직여 나가던 젊은 열혈청년들의 기개야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나 일반시민들까지도 잘못된 사회제도나 기구로 인해 죽어갔는데도 명확한 진상규명이

일반시민들까지도 잘못된 사회제도나 기구로 인해 죽어갔는데도 명확한 진상규명이나 가해자의 처벌없이 제대로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을지 의구스럽습니다. 희생자들은 인적이 드믄 도로나 호수 산속깊은 동굴속이나 수심깊은 바다속 심지어 시내중심가에서도 위장이 된 채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는 데도 국가에서는 단순자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고문이나 계획된 음모에서 꾸며진 확실한 국가권력의 살해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온 우리로서는 우리의 행동이 당연한 것이며 자식들의 뜻은 우리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먼저간 선각자의 뜻이 있기에 역사는 발전하며 희생자들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의 대역사를 이끌어 가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십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몸은 병들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저는 오월광장 어머니들의 한국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하지 못하지만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주체성에 의한 조직력과 의식성을 갖고 있는 오월광장 어머니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길거리에서 노상을 하는 회원으로부터 자식이 주는 용돈을 쪼개어 가며 기금을 내는 회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열의는 지대합니다.

비록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인해 3분밖에 초청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3분의 대표를 고난받는 아르헨티나의 전체로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민선정부와 한국의 민간독재는 내용이야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과거사와 한국의 과거사는 청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사 정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권력과 자본은 기만입니다. 아직도 불어나고 있는 희생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월을 맞이하여 남한에서 쓰러져간 전체의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를 11일날 한양대학교에서 치루게 됩니다. 희생자들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고자 하는 이 행사에는 오월광장 어머니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모든 행사에서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끈끈한 연대는 곳곳에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온 지나간 이야기들을 지면을 통하여 글로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모쪼록 만남을 통하여 다쓰지 못한 내용들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조국의 현실이 자유로워지고 전체의 고통이 없어지는 날을 고대하며 멀리서나마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며 연대사에 가름하는 글을 띄웁니다.

만나뵙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1994년 5월 20일 서울에서

## 방문일정과 행사내용

• 주요행사일정 •

6. 7 (화) '5월광장 어머니회' 방한 환영 및 기자회견(오후2시 김포공항)
'5월광장 어머니회' 환영모임 (오후8시30분 기독교백주년기념관 그릴)

6. 8 (수) '평화를 위해 싸워온 5월광장 어머니회 20년'
- 초청강연회, 비디오상영, 사진전시회
(오후6시30분~8시30분 예음홀 또는 기독교회관)

6. 9 (목)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민가협 목요집회
(오후6시30분~7시30분 종로3가 탑골공원)

6. 10 (금) 과거청산, 인권침해 범죄자의 불처벌 : 아르헨티나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전략
- 전문가와 활동가를 위한 워크샵 (오후7시 장소미정)

6. 11(토) '민족민주열사 범국민 합동추모제' (오후3시 한양대학교 노천극장)

6. 12(일)~6. 14(화) 광주행사 - 망월동 묘역 참배, 유가족들과의 만남, 대중 강연회

6. 15 (수) 한국-아르헨티나 공동심포지움 인권침해 범죄자의 불처벌(Impunity) 문제
-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 (오후4시~7시 서초동 대한변협 강당)
주최 : 대한변호사협의회, 초청추진위

6. 16 (목) 마석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참배 (오전10시~오후2시)

6. 17 (금) 희망과 연대의 시작 : 한국, 아르헨티나 어머니들의 밤 - 문화한마당
공동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오후6시~9시 장소미정)

• 주관단체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5월성역화를위한시민연대모임,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5월성역화를위한시민연대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 후원단체 •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 5.18광주민중항쟁14주년 행사위원회,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초청인단 •

박형규, 김승훈, 월주스님, 홍성우(공동대표) 외 200인